

최종보고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법적 지위향상에 관한 연구
중도입국청소년을 중심으로

2022년 5월 20일



사단 **한국다문화복지협회**
법인 Korea Multicultural Welfare Association

이 연구는 의정부시의회의 최정희, 김정겸, 김연균 시의원의 연구과제로 수행된 것이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의정부시의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출 문

의정부시의회

본 보고서를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법적 지위향상에 관한
연구 : 중도입국청소년을 중심으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기간 : 2022년 1월 20일~5월20일까지



사단 한국다문화복지협회
법인 Korea Multicultural Welfare Association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법적 지위향상에 관한 연구
중도입국청소년을 중심으로

연구진

연구책임자 조윤희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다문화센터장)

공동연구원 송정애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부자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시의원 최정희
김정겸
김연균

연구보조원 한태희 (신한대학교 다문화센터 과장)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문제	5
II	현황 고찰	 6
1.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의 개념	6
2.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현황	8
3.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법적지원 현황	10
4.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법적지위의 한계	17
5.	소결	20
III	선행연구	 22
1.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현황, 지원 상황 및 개선점	22
2.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다문화교육	23
3.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법적제도	24
4.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인권	25
IV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28
1.	정성조사	28
2.	분석결과	34
V	연구결과	 75
VI	정책제언	 80
	참고문헌	84
	부록	87

표/그림 목차

I 표 목차

〈표 II-1〉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유형 및 정의	7
〈표 II-2〉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09
〈표 IV-1〉 부모 심층면접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30
〈표 IV-2〉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심층면접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31
〈표 IV-3〉 교육 실무자 심층면접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31
〈표 IV-4〉 부모 심층면접 반구조화 설문 문항의 구성	33
〈표 IV-5〉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심층면접 반구조화 설문 문항의 구성	33
〈표 IV-6〉 교육 실무자 심층면접 반구조화 설문 문항의 구성	34
〈표 IV-7〉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가정양육 경험에 대한 개념과 범주에 따른 분석	35
〈표 IV-8〉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 학교 교육에 관한 경험에 대한 개념과 범주	39
〈표 IV-9〉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지역사회 생활 경험에 대한 개념과 범주에 따른 분석	44
〈표 IV-10〉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공공서비스 지원 한계와 욕구에 대한 개념과 범주에 따른 분석	47
〈표 IV-11〉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행정 및 정책변화에 대한 의견에 대한 개념과 범주에 따른 분석	51
〈표 IV-12〉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심층면접의 주요 결과	53
〈표 IV-13〉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경험에 대한 개념과 범주에 따른 분석	55
〈표 IV-14〉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생활 경험에 대한 개념과 범주에 따른 분석	62
〈표 IV-15〉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공공기관 생활 정책지원 한계와 욕구에 대한 개념과 범주에 따른 분석	65
〈표 IV-16〉 기관 종사자들의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가족경험에 대한 개념과 범주에 따른 분석	68

〈표 IV-17〉 기관 종사자들의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학교경험에 관한 개념과 범주에 따른 분석	69
〈표 IV-18〉 기관 종사자들의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지도경험에 관한 개념과 범주에 따른 분석	71
〈표 IV-19〉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기관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제안하는 요구에 관한 개념과 범주에 따른 분석	73
〈표 IV-20〉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기관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제안하는 지역사회 역할에 관한 개념과 범주에 따른 분석	74

I 그림 목차

〈그림 II-1〉 초·중등 다문화 학생수	09
〈그림 IV-1〉 심층 분석 면접의 과정	2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수는 약 2,100,436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까지 추가한다면 약 396,728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즉, 국내거주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4.4%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021년 기준 경기도의 인구는 13,427,014명이며 이중 외국인 수는 563,435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18세미만 아동인구는 2,190,957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16.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의 인구는 46만 4,358 명이며 이중 외국인수는 6,431명 나타났다. 2020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자료에 의하면 외국인과 혼인건수는 전년대비 34.6%감소하였고 출생도 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중·등 다문화학생수는 2013년 55,780명, 2017년 109,387명, 2020년 147,378명으로 2013년 대비 약 3배 증가하였으며 2020년 다문화학생 중 초등학생이 73.1%, 중학생 18.2%, 고등학생이 8.5%였다. 이와 같이 전체학생 중 다문화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교육부에서는 매년 다문화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2022년 다문화교육지원계획은 출발선평등을 위한 교육기회 보장과 학교적응 및 안정적 성장지원, 다양성이 공존하는 학교환경조성, 다문화교육 지원체제 내실화 등 4개 과제, 9개 세부과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세부과제중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중앙-지역 및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면서 학교내외 학교밖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을 포함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관심은 결혼이민자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함으로써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유아기 자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난민아동과 청소년, 다문화 아동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자녀 등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가족과 아동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가 초·중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무엇보다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게 되었다. 여성가족부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18)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의 문제는 부모세대의 차별은 감소하고 2세대 자녀세대들이 경험하는 차별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1세대인 결혼이민자들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비중이 2015년 40.7%였으나 2018년 30.9%로 감소한 반면 다문화가정 자녀 중 차별을 경험한 비중은 2.3% 증가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다문화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 발달하고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Fredricksen (1957)은 아동이 성장발달하기 위하여 건강한 가정과 부모, 경제적 안정, 교육, 보건과 의료, 놀이와 오락문화, 노동으로부터 보호, 특수아동의 보호¹⁾등의 기본조건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본조건을 토대로 다문화아동과 청소년들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환경조성이 필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국제적 기준을 토대로 하며 국제적 기준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적 측면과 발달적 측면을 근거로 한다.

국제적 근거로서 1989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은 아동과 청소년의 실질적인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아동권리협약의 조항을 토대로 아동관련 법을 마련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아동권리협약을 토대로 아동과 청소년관련법을 제정하였고 법적 보호체계를 마련하였다. 아동관련 직접법에 해당되는 헌법 제31조2항에서는 교육에 있어서 자녀의 보호를 제32조 5항에서는 근로에서 연소자의 보호를, 11조에서는 차별금지, 제36조에서는 가족생활로서 아동보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또한 아동복지와 관련된 기본법인 아동복지법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제2조에서는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4조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제2항에서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아동복지와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을 위한 포괄적 법적 지원체계를 토대로 장애아동을 위한

1) Fredericksen(1972)은 특수한 욕구를 지닌 아동유형을 정상적인 결혼을 하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 취업모자녀, 장애아동, 인격 및 행동장애아동, 소수집단 혹은 다문화아동, 저소득층 아동으로 분류함(송정애, 아동복지론 p 62).

장애아동복지지원법과 학대아동을 위한 법등이 마련되는 등 다양한 아동을 위한 특별법등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UN아동권리협약에 의거 2019년 5,6차 국가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대한 심의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특히 위원회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 학교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제정과 아동권리원 설립, 아동영향평가제도, 온라인출생신고제도, 만7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지급제도 도입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반면에 권고사항으로 협약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의 불가분성 및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며 특히 비차별,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체별을 포함하는 아동에 대한 폭력, 성적 착취 및 학대, 교육 및 교육의 목표, 소년사범 운영 등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중 다문화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2007년 이후 차별금지법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농어촌지역아동,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장애아동, 이주아동, 다문화가정아동, 탈북아동이 출생신고, 보육시설이용, 교육, 보건의료서비스, 복지, 여가 및 국가가 제공하는 보호체계 접근에 차별을 경험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제정과 전략시행, 소외된 상황에 있는 아동에 대한 차별 방지 및 대중 캠페인 시행, 당사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출생등록과 보육 시설, 교육, 보건, 복지, 여가 그리고 국가지원에 접근보장 등을 권고하였다. 또한 난민신청아동과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장애아동을 위하여 재활치료, 적절한 복지 그리고 의료적 지원을 포함한 조기발견 및 개입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과 난민과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보장,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용 보장, 모든 아동이 출신, 거주지, 사회경제적 및 이주지위, 이주민으로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의무교육보장, 모든 난민신청아동과 난민아동 그리고 이주아동이 출생등록, 보육, 교육 및 관련서비스, 정신적, 신체적 보건의료, 건강보험, 경제적지원 및 주거지원, 여가, 학대받은 경우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한국아동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관행적 장벽 제거할 것과 아동권리협약과 부합하는 이주아동권리법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 난민신청자 및 난민 중 특히 아동에 대한 혐오발언 근절 캠페인을 전개할 것, 미등록아동을 포함한 이주아동에 대한 자료수집을 강화할 것, 난민아동, 난민신청아동 및 이주아동을 위한 예산을 배정할 것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아동권리와 관련되어 국제적 기준에 발맞추려는 우리나라의 성과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으나 다문화아동과 청소년 등 이주아동의 권리와 관련하여 국가적, 지역적조치가 다소 미흡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권고사항을 토대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하였다.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중심”, “권리주체”라는 기조가 정책전반에 뿌리내리도록하고 코로나19등 재난이 아동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내용으로 하였다. 권리와 발달지원, 보호, 코로나19 대응을 중점과제로 하였으며 그중 다문화 아동, 청소년관련정책은 보호과제 중 다양한 배경아동이 함께 존중, 이해하며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에 포함하였다, 세부적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서비스 다양화 및 의료등 필수지원서비스 지원을 과제로 하고 이를 위하여 가족센터 기능강화, 다문화가족 등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아동의 입국초기 적응서비스, 다문화,아동청소년의 종합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사업 시범도시 운영, 지역기관 민,관,학 협의체 구성운영, 미등록이주민 자녀에 대한 의료비지원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동권리와 발달적 측면을 고려한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면서 아동권리와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더불어 다문화아동과 청소년 등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비차별 전략이 수립되었으나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사회 즉 기초지방자치단체차원의 정책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2021년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아동권리보장원, 2021) 경기도의 경우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이 지역여건과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고 특히 시.군단위의 적절한 새로운 사업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4대영역중 돌봄영역에 지나치게 편중되었으며 일부기초단체에 집중된 사업이 아닌 지역별 특성 있는 자체사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의 자연적 조건과 도농격차, 경기남북 간 차이, 인구구성 등의 측면을 고려한 자체사업에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은 국제적 기준을 토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고 모니터링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차원의 정책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와 법적지위와 관련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다문화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와 법적지위를 논의 하고자 하는 시도는 매우 드물었다. 특히 입법기관에 해당되는 의정부시의회의 관점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의 법적지위에 대한 다양한 요인을 검토해보고 법적지

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청소년들의 법적지위와 다양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청소년, 그들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법적지위 향상과 관련된 요구와 기대를 청취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의정부시 차원의 제도적, 서비스적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의정부시차원의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의 법적지위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다문화가정 아동과 청소년들의 현황과 주요문제는 어떠한가?
- 둘째, 다문화가정 아동과 청소년의 법적지위(정책적 측면, 서비스적 측면)는 어떠한가?
- 셋째, 다문화가정 아동과 청소년, 부모들의 법적지위에 대한 요구와 기대는 어떠한가?
- 넷째, 의정부시 차원의 다문화가정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법적지위향상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Ⅱ 현황고찰

1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의 개념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말한다. 다문화가족은 '재한의 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라고 하고 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 따라 무지개청소년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운영주체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유형을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 탈북청소년,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그리고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은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다문화가족의 청소년이다. 다문화가족이 청소년은 외국 국적자와 대한민국 국적자 사이의 국제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족의 청소년자녀를 말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난 이민 2세를 의미한다. 두 번째 유형은 외국인근로자가정의 청소년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이 아닌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즉, 외국인근로자 가정의 청소년은 부모가 외국인근로자로 구성된 가족의 청소년 자녀를 가리킨다. 대한민국은 외국인근로자의 가족동반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가정의 청소년은 사실상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아니다. 그러나 동포 외국인근로자 가정의 자녀인 경우는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다(오영섭, 김영순, 왕금미, 2019). 세 번째 유형은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이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은 2000년 이후 국제결혼 중에서 재혼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형성된 가정의 청소년이다. 하나의 유형은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면서

본국의 자녀를 입양의 형식으로 데리고 오는 경우다. 다른 유형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에서 외국인 부 혹은 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재입국하는 경우이다(양계민, 조혜영, 2013).

네 번째는 북한이탈주민청소년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동법 제24조 2에서 탈북청소년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탈북청소년은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다섯 번째 유형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이다. 탈북 후 중국 등 제3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현지인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오영섭, 김영순, 왕금미, 2019). 이들은 탈북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비호청소년’이라 부른다(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20). 여섯 번째 유형은 난민 청소년이다. 한국은 1994년부터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해 2001년에 최초로 난민을 인정함으로써 ‘난민가정 자녀’도 존재한다. 그중에는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는 인도적 체류자도 포함된다(신난희, 2019).

본 연구는 의정부시의 외국인 부모와 함께 입국한 자녀, 결혼이주여성의 전혼자의 자녀,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자녀와 난민의 자녀까지 포함하여 본국에서 성장 후, 한국에 입국한 9~24세까지의 청소년을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한다.

〈표 II-1〉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유형 및 정의

유형	구분	자녀
결혼이주민 가정 자녀	국내출생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의 초청이나 동반으로 입국한 자녀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국내출생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부모의 초청이나 동반으로 입국한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국내출생	북한에서 태어나고 탈북해서 부모와 함께 입국한 자녀
	제3국 출생	부모가 북한이탈주민으로 제3국에서 태어난 자녀
난민가정 자녀	국내출생	난민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난민의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입국한 자녀

출처: 임우영(2016) 수정 후 재인용

2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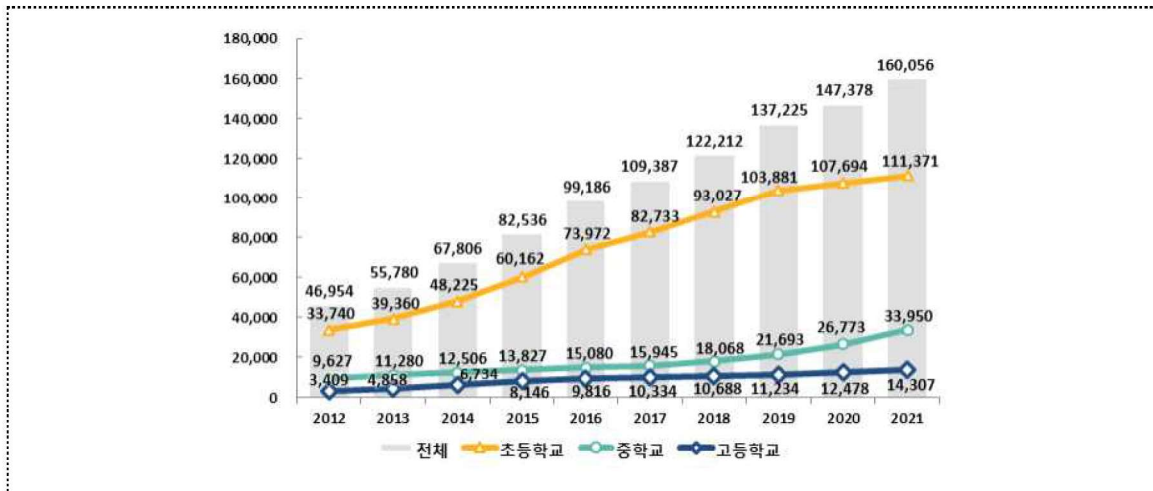
2021년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초·중등(각종학교 포함) 다문화 학생수는 160,056명으로 전년(147,378명) 대비 12,678명(8.6%↑) 증가하여, 2012년(46,954명) 조사 시행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초등학교는 111,371명으로 3,677명(3.4%↑), 중학교는 33,950명으로 7,177명(26.8%), 고등학교는 14,307명으로 1,829명(14.7%↑) 증가하였고, 각종학교 428명으로 5명(1.2%↓) 감소하였다.

초·중등 학생 중 다문화 학생 비율은 3.0%로 전년(2.8%) 대비 0.2%p 상승하였다. 초등학교가 4.2%, 중학교 2.5%, 고등학교 1.1%로 전년 대비 초등학교 0.2%p 상승하였다. 초등학교가 4.2%, 중학교 2.5%, 고등학교 1.1%로 전년 대비 초등학교 0.2%p, 중학교 0.5%p, 고등학교 0.2%p 상승하였다. 부모 출신국별 다문화학생 비율은 베트남 32.2%, 중국(한국계 제외) 23.6%, 필리핀 10.0%, 중국(한국계) 8.2%, 일본 5.2%이다. 유형별 다문화학생 비율은 국제결혼가정(국내출생)이 76.3%(122,093명)로 가장 높았고, 외국인가정 17.8%(28,536명), 국제결혼가정(다문화, 아동청소년) 5.9%(9,427명)이다. 다문화학생 비율은 3.0%로 전년대비 0.2%p 상승하였다.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 비율은 초등학교가 4.2%로 전년 대비 0.2%p 상승, 중학교는 2.5%로 전년대비 0.5%p 상승, 고등학교는 1.1%로 전년대비 0.2%p 상승하였다.

국제결혼가정(국내출생)의 다문화학생이 전체 다문화 학생의 76.3%이다. 유형별 다문화학생 비율(수)은 국제결혼가정(국내출생)이 76.3%(122,093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가정 17.8%(28,636명), 국제결혼가정(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5.9%(9,427명) 순이다.

부모의 출신 국적별 다문화 학생 비율(수)은 베트남이 32.2%(51,532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부모의 출신 국적별 다문화학생 비율(수)은 베트남 32.2%(51,532명), 중국(한국계 제외) 23.6%(37,805명), 필리핀 10.0%(15,935명), 중국(한국계) 8.2%(13,175명), 일본 5.2%(8,28명) 순이다.

〈그림 II-1〉 초·중등 다문화 학생수



〈표 II-2〉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단위 : 명)

연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12년
전체	소계	160,056	147,378	137,225	122,212	109,387	99,186	82,536	67,806	55,780	46,954
	초등 학교	111,371	107,694	103,881	93,027	82,733	73,972	60,162	48,225	39,360	33,740
	중학교	33,950	26,773	21,693	18,068	15,945	15,080	13,827	12,506	11,280	9,627
	고등학교	14,307	12,478	11,234	10,688	10,334	9,816	8,146	6,734	4,858	3,409
	각종학교	428	433	417	429	375	318	401	341	282	178
국제 결혼 가정	국내 출생	소계	122,093	113,774	108,069	98,263	89,314	79,134	68,099	57,498	40,040
		초등 학교	86,399	85,089	83,602	76,181	68,610	59,970	50,191	41,546	29,282
		중학교	25,368	19,532	15,891	13,599	12,265	11,475	11,054	10,316	9,162
		고등학교	10,182	9,049	8,464	8,361	8,335	7,589	6,688	5,562	3,793
		각종학교	144	104	112	122	104	100	166	74	36
	다문화, 아동청 소년	소계	9,427	9,151	8,697	8,320	7,792	7,418	6,261	5,602	4,288
		초등 학교	4,953	5,073	5,148	5,023	4,843	4,577	3,965	3,262	3,006
		중학교	2,773	2,459	2,131	1,907	1,722	1,624	1,389	1,386	1,143
		고등학교	1,519	1,415	1,220	1,185	1,063	1,075	723	750	565
		각종학교	182	204	198	205	164	142	184	204	208

연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12년
외국인가정	소계	28,536	24,453	20,459	15,629	12,281	12,634	8,176	4,706	5,044	2,626
	초등 학교	20,019	17,532	15,131	11,823	9,280	9,425	6,006	3,417	3,531	1,789
	중학교	5,809	4,782	3,671	2,562	1,958	1,981	1,384	804	975	448
	고등 학교	2,606	2,014	1,550	1,142	936	1,152	735	422	500	326
	각종 학교	102	125	107	102	107	76	51	63	38	63

주 1) 다문화 학생 수 = 국제결혼가정 자녀 + 외국인 가정 자녀

2) 국제결혼가정 자녀 :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모(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국내출생과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됨

- 국내출생 자녀 :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
-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 :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자녀

3) 외국인가정 자녀 :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3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법적지원 현황

1) 법적지원 근거

정부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의 권리보장을 위한 다양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을 생존, 발달 보호에 관한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인권옹호, 사회적응 지원, 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응교육 및 자녀에 대한 교육과 의료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지원대책 마련 및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의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지원을 위한 가장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공교육 진입 지원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각각의 법률 및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자.

2)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에 관한 기본권리를 명시한 국제적 협약으로 1989년 11월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아동권리를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자원을 시의 적절하게 제공받아 사용하고, 위대한 모든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아동자신의 성장과 미래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이혜원 외, 2010).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며 성인과는 다른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아동의 기본적인 인권에 더하여 국가와 사회, 그리고 부모와 어른들이 지켜야 하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밝혀 법으로 보장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법 제2조, 10조, 28조, 29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분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3. 당사국 정보는 아동 또는 부모가 서로 간의 면접을 위해 출국이나 입국을 신청할 때 이를 신속히 받아들여 부모와 자녀 간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28조

1. 당사국 정보는 모든 아동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초등교육을 의무화해야 하는 한편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 가.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이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나.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다. 교육 및 직업에 대한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라. 학교에의 정기적인 출석과 탈락률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 가. 아동의 인격·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내포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계발
 -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 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계발
 - 라. 아동이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계발

3)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2007년 5월에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재한외국인'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영주권자, 난민, 전문 외국인력,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인권 옹호, 사회적응지원, 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응교육, 자녀에 대한 교육 및 의료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법 제10조에서는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노력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 12조에서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및 의료 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과 그 자녀를 위한 지원의 필요는 인정하고 있으나 그것을 국제협약의 조항과 같이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어 재한외국인과 그 자녀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다(류방란 외, 2011). 또한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한정하고 있어, 국제결혼 재혼가정 모친의 이전 결혼 소생 자녀는 이 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 중도입국자녀 지원 근거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 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7.23〉
- 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4)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제정된 다음 해인 2008년 2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법 제10조는 아동의 보육과 교육에 관한 조항으로, 다문화가족 아동 차별 금지, 다문화가족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대책 마련 및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등 지원,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 노력,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한 한국어 교재 지원, 학습 지원 등 언어 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이 명시되어 있다. 법 제14조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하여도 동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3년 8월 13일 신설된 조항에서는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

녀에 대해서는 동법을 적용하여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의 적용대상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근거하여 합법체류중인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로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와 난민신청자의 자녀, 결혼이민여성의 이전 결혼 소생 자녀는 법 적용을 받을 수 없어(류방란,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실태조사 32외, 2011)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자녀의 교육권은 적절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관련 법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아동 보육·교육)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제14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4조의 2(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적용 특례)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13.8.13][시행일 : 2014.1.1]

5) 청소년복지지원법

2004년 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의 복지 향상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그 후 2011년 12월 전면 개정된 동법에서는 처음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라는 용어와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탈북청소년, 외국인근로자 자녀 등 다양한 이주 경험이나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을 포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신현옥 외, 2012).

법 제18조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법 제30조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가장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와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제18조(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제30조(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지원센터)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교육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2001년 3월 불법체류 노동자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 지침을 마련한 이후, 2006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부분 개정하여 외국인노동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2008년에는 초등학교 전·입학은 외국인등록증이 없어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임대차 계약서 혹은 지인의 보증만 있으면 허용되도록 하였다. 2010년에는 재개정을 통하여 그동안 학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중학교 전·입학 절차를 없애고 초등학교 전·입학 절차를 중학교까지 확대하였다. 외국인 아동 및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자녀에게 중학교 진학이 수월해져서 교육 기회가 확대되었지만,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와는 달리 학교별로 입학전형이 이루어지는 고등학교는 학교장 재량

과 학칙에 따라 입학 여부가 결정되는 한계가 있어 진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19조(귀국 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귀국학생 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군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장에게 귀국학생 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7)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2021년 10월 17일 머니투데이 기사에 의하면 의정부시는 외국인·다문화가족 ‘맞춤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 공표한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 현황 통계에 따르면 의정부시 외국인 수는 9,762명으로,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은 2.2%로 전국 평균 4.3%보다 낮은 수치에 속한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구현을 위해 교육·문화·의료·방역 전반에 걸쳐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국내 입국 이력 부재, 여권 기간 만료 등 불법체류 외국인을 포함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는 2022년 2월 9일 조례 제3184호(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다. 의정부시의 조례는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 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 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그 자녀 등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가족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4.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5. 그 밖에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법적지위의 한계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의 법적 지위 및 현황을 열거하면서 이들에 대한 이민정책에 있어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의 사회 적응에 장벽이 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법무부 출입국 이민정책에 따른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자녀의 체류자격은 모두 4가지로 단기방문(C-3), 유학(D-2), 방문동거(F-1), 동반(F-3)의 경우이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때 이들이 성년인 경우는 일반 귀화나 간이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고, 미성년인자인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자인 부 또는 모에게 입양이 되거나 또는 외국인인 부 또는 모의 국적 취득에 따른 수반 취득만이

가능하다(송효진, 안소영, 2016). 만 19세가 될 때까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면 취업 등 여러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불법 체류자로 추방되거나 불법취업자가 되어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산업인력을 배출하지 못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예측되므로 체류 자격부여를 함에 있어서나 사회통합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류방란과 오성배는 재혼가정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계부(한국인 아버지)가 입양의 절차를 거치면 특별귀화의 대상이 되어 국적취득이 가능하고, 계부가 입양을 하지 않더라도 어머니의 체류기간이 2년 이상이 경과하면 미성년의 자녀는 특별귀화 대상이 되어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류방란, 오성배, 2011).

한국에서는 2007년 7월에 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해 제 12조에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에 대해 인권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및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는 제한이 있다. 류방란 외는 이 법의 적용이 합법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로 한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의 자녀, 난민신청자의 자녀는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결혼이민 여성의 이전 결혼 소생 자녀에 대해서는 귀화 이전 적절한 교육권보장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류방란, 오성배, 2012).

UN 아동 권리 국제 협약 제 2조에 의하면 국내 출생 아동뿐만 아니라 이주 아동 등 모든 아동들이 신분, 성별, 언어, 종교, 신념, 활동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고 권리가 보장된다. 특별히 아동의 대표적인 권리 중에 교육받을 권리가 천명되어 있다. 류방란 외는 이러한 조항에 비추어 우리나라에 온 중도 동반입국 청소년들이 초등교육 기회 보장 및 필요한 재정 지원, 학교의 적응과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류방란, 오성배, 2012).

학교 밖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사례를 연구한 손영화, 박봉수는 국내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법적 지위에 관련한 법적 지위가 매우 약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유엔아동권리 협약이 명시하고 있는 54개 조항 중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있는 조항으로는 제2조(비차별, 평등), 제7조(정체성), 제8조(신분보장권), 제9조(부모와 이별), 제10조(가족의 재결합), 제26조(사회보장권), 제28조(교육보장권), 제30조(소수민

족 아동 등 이주아동보호)가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법적인 통제 기능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함을 언급하고 있다. 재한 외국인처우기본법이나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교육지원이나 의료지원을 통해 한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합법적인 체류자나 국제결혼가정 대상으로 한정 짓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일부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들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한다(손영화, 박봉수, 2015).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과 관련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은 2003년 국회는 의결을 통해 청소년 기본법을 개정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세 개의 법안 청소년복지지원법은 2012년도에 전면 개정되어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이나 이주경험을 가진 청소년, 외국인근로자 자녀가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18조에 최초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용어와 근거가 제시되어 있고, 제 30조에서는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윤향희, 김경제(2016)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족 청소년을 주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한계점을 지적한다. 윤향희, 김경제(2016)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은 일시 방문 형태로 입국하기 때문에 법조항에 따른 국내로 이주하는 형태의 체류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한국어 의사소통으로 인해 공교육에 진입해있는 상태의 신분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없는 법조항이라는 한계가 있다. 또한 윤향희, 김경제(2016)는 청소년의 법적권리가 사회적응과 학습 능력 향상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재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그들의 잠재능력 개발이나 고등교육의 기회 제공 그리고 직업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나아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30조에는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하면서 재정적 지원과 보급에 대한 업무가 빠져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의미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중대한 결함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법은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근거를 찾을 수 있다. 2006년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19조 1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2008년 2월 시행령에는 외국인등록증이 없어도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자녀들이 출입국 사실이나 임대계약을 증명하거나 또는 가까운 사람의 보증서를 제시하면 초등학교 전학, 입학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2010년에 개정된 시행령 제9조에는 중학교 전학, 입학 절차를 없애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자녀들이 초, 중등 의무 교육으로 인한 교육 기회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에서도 제 3차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을(2018년~2022년) 수립하면서 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침들을 마련하였다. 미래사회에 적합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하여 이중 언어 체계를 고도화하고 수학, 과학, 언어, 예체능 분야에 대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글로벌 브릿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공표하였다. 두 번째로 성장주기별, 대상특성별 지원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청소년기 다문화 학생을 위한 진로, 정서 지원 확대에 힘쓰며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외국인 가정 자녀를 위한 다문화 예비학교 및 한국어 교육과정 내실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응 지원 확충할 것과 공교육진입 확대를 위한 범부처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나아가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자녀의 외국인 부 또는 모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등 가족 허가 시 자녀의 취학여부를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추진한다고 선포하고 있다(법무부, 2018).

5 소결

이주아동의 법적 권리를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는 달리, 국내 관련법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자녀가 갖는 법적인 권한이 매우 소극적이며 제한적이다. 외국인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와 인권 옹호 및 교육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재한 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은 한국에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실태 조사에서 출생한 국제결혼이민자가족의 자녀로 한정하여 국제결혼 재혼가정 여성의 이전 결혼 소생 자녀, 즉 중도 입국자녀의 경우는 체류신분에 따라 법 적용 대상에서 제한적이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불법체류 노동자 자녀와 귀국학생의 교육권이 의무

교육인 중학교까지 확대되어 보장되고 있지만, 의무교육 이외에 한국에서 출생한 다문화 가정자녀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의 수혜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 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소극적이며 제한적이다. 이러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지위에 관련한 내용은 의정부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시군이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적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매우 소극적이며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Ⅲ 선행연구

2010년 이후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구보고서와 관련 논문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이 어떤 관점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지와 법적지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선행연구들을 정리해보았다.

1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현황과 지원 상황 및 개선점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현황 및 지원 상황 및 개선점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정하성 외(2007)는 <다문화청소년 이해론>을 통해 6개의 주제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주고자한다. 다문화이해와 다문화 청소년의 유형 및 특성, 다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 다문화교육, 지역사회 다문화 육성, 청소년 다문화 산업. 저자는 다문화청소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 등을 통해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문화 활동의 공간들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글은 한국 다문화사회 초기에 다문화아동 청소년들의 문제점과 어려움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영역을 소개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다문화 아동청소년들의 문제를 프로그램 운영 위주로 해결하려는 단순성의 한계를 보인다.

이승미, 이해응, 이화용(2017)은 <서울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현황 및 지원방안연구>을 제목으로 한 연구보고서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현황과 지원체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정책들에 대한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최신의 통계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어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관련 정책의 서울시 지역적 특성 반영 부족, 2) 후기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동기 부여 부족, 3) 정보제공 경로 미비, 4)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불안정 5) 진로설계의 어려움 등.

최인수(2018)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실태분석과 다문화교육 지원개선 방안> 논문에서 기존의 어느 연구 보고서나 논문에 못지않게 최근의 정보들과 자료들을 가지고 다문화청소년의 실태를 분석하고 있으며, 다문화교육 정책의 개선점을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부류의 현장의 소리를 심층면담으로 담아내고 있다. 저자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다문화청소년들의 일반적인 어려움과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을 유형별 실태,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 실태를 기술하였고,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피력하였다.

2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다문화교육

이현정(2011)은 <미래의 우리를 만드는 다문화 교안>에서 전 국민을 위한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정 자녀 및 이주민을 위한 다문화교육, 한국과 세계를 잇는 다리로서 재외동포에 대한 세 가지 관점으로 다문화교육을 접근하고 있다. 저자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자녀들의 열악한 환경과 상황과 학교이탈 자녀를 위한 교육의 방향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박선웅, 우현정(2013)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인 되기>에서 2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12명의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학생들을 심층 면접하고 그들의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근거이론 접근을 통해 적응의 양상을 분석하고 유형화하였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은 한국인 되기 과정을 밟고 있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짜 한국인’, ‘미완의 한국인’, ‘특별한 한국인’, ‘국적 없는 한국인’ 등 4가지로 구분하여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회문화적 적응과정을 연결하고 있다. 저자는 이 글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부모부터 사회문화적 편견 깨뜨리고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는 양육을 해야 하며, 한국어 습득이 빠를수록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습득 기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주장한다.

서은숙(2016)은 <이주배경(이민) 청소년 다문화교육>에서 2016년 현행 학교 다문화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서은숙은 학교 다문화교육의 문제점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다문화 교육의 정확한 방향과 목표가 정해지지 않았다. 둘째, 학교 다문화 교육의 방향과 목표의 부재에 따라 교육할 내용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셋째, 국가 차원의 이민정책과 지원법 등과 연계 다문화 교육이 부재하다. 넷째, 학교 다문화 교육의 대상별, 주기별 맞춤형 교육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및 북한 이탈 청소년, 난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 교육의 경우 주기별로 단계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주 초기 단계는 조기적응 교육이 필요 하고 후기단계에는 학습, 진로 교육 및 상담을 통한 정착 및 인재양성 교육이 필요하다. 서은숙은 바람직한 다문화교육 방향을 통합교육, 사회네트워크를 통한 교육, 가치교육을 통한 정체성 함양으로 제안하고 있다.

류방란(2011)은 외국출생 동반입국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 대안학교 3개교 방문, 교사 15명, 민간 기관 담당자 1명과 청소년 8명 면담을 근거로 중도 동반입국 청소년의 교육 실태와 관련한 교육복지, 청소년의 규모, 법적지위, 정책 현황, 외국의 사례 등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는 중도 동반입국

청소년을 위한 정책으로 교육권의 실질적 보장, 통합성 추구, 반차별 다문화교육 확산 등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3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법적·제도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들이 자신의 존재를 법적,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배제적인 다문화정책을 개방적인 방향으로 수정할 것을 건의한다.

윤향희, 김경제(2016)는 <다문화,아동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선방향>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내용이 주로 한국 사회 적응과 학교생활이나 공교육, 또래관계, 정체성과 진로 지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지적하며 이들의 법적인 지위가 매우 불안정한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저자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상에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은 <다문화가족의 자녀 보호를 위한 법. 제도개선방안 연구>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 법제 현황을 다루면서 이주아동,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자녀

의 입양과 파양, 혹은 부모의 이혼에 관련한 이슈나 한국 생활적응 관련 이슈 및 개선과제, 체류 문제 개선을 언급하고 있다. 이주 아동이 부모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강제퇴거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이는 구금, 교육권 침해 등 심각한 인권침해로 연결되는 것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김양현(2012)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한 방안>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초, 중학교 의무 교육의 정부 정책에 따라 공교육을 받고 있지만 일반 학교의 부적응으로 인해 학업 중단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청소년 비행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 경고하면서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저자는 이에 대한 예방 방안으로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개인, 사회, 문화 등을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며, 재학상태에 있지 않은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다양한 상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가정해체에 따른 청소년 보호 대책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비행에 관한 학문적 연구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신동, 김진호, 이상희, 이경숙, 차재경, 황은진, 주소영(2016)은 <다문화가정과 부모교육>에서 다문화, 아동청소년자녀의 통계현황과 현행 다문화교육정책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저자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정의 중요성을 다루면서 학교와 학교 밖 다문화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한 양육방법과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인권

손영화, 박봉수(2015)는 2013년 12월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학교 밖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사례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2015년에 논문을 출판하였다. 이 연구는 인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4명을 심층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제언을 담고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인권문제는 주로 생활에서 존재하는 상호 부작용, 불이해,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것이고 제도적 현실의 인권 문제로는 학제의 차이, 체류 신분의 문제, 부모와 분리에

의한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 인권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첫째,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지원, 둘째 다문화교육을 통한 상호 문화 이해 분위기 조성, 셋째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의 실태와 문제를 진단하는 로드맵 제시, 넷째 강제적 차별금지법률 명시, 다섯째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다문화교육 형성 등이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인권의 시각에서 구분하여 명료화 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법적 지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복잡한 인권 문제를 두 가지 분류로 단순화시키고 있는 한계점이 있으며, 특정 지역에 속한 네 명의 청소년을 인터뷰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인권문제를 일반화 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생각 한다.

권보근, 장인실(2017)은 <이주배경청소년의 학교적응 요인연구: 다문화 예비학교를 중심으로> 라는 학술지에서 다문화 예비학교에서의 이주배경청소년의 초기 적응 과정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해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6개월간 다문화 예비학교 의 초등학교 학령의 이주배경청소년 15명과 현장교사를 선별하여 심층면담 및 참여관찰을 실시 한 연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적 차이로 인한 생활적응과 학습적응에서도 어려움을 느낀다고 피력하면서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학교 적응하는데 필요한 주요 요인을 의사소통, 생활적응과 학습적응, 관계형성으로 구분하였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의 학교 적응 어려움을 현실적인 네 영역으로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초기적응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맞춤형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과 이주배경청소년의 부모를 위한 학부모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대상이 매우 소수인 점에 있어서 한계가 있으며, 또한 학교 적응에 실패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에 대한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못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 정리해보면,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은 시공간 환경의 변화를 겪으며 문화의 차이로 인해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압박감으로 사회, 가정, 학교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은 학교 형태의 형식 교육체제 에서 한국식의 강요된 수업 형태로 교육을 받기에는 무리가

많으며 오히려 실패와 좌절을 반복 하게 함으로 학교 밖 청소년으로 내몰리게 되어 사회적 비행과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의 한국 사회 부적응 문제들의 원인을 살펴보고 분석을 통한 진단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재정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정책들이 시행착오와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동안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들의 조기 정착 여부와 정체성 확립의 문제는 단지 개개인의 능력이나 자신의 사안이 아닌 사회 적 이슈와 책임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문화아동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비형식 교육기관들을 통한 사회통합 지원을 함으로써 안정적 정착을 돕는 길이다.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비형식 교육 제도와 기관들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고,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바른 방향의 다문화 정책을 정립해야 한다.

IV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정성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성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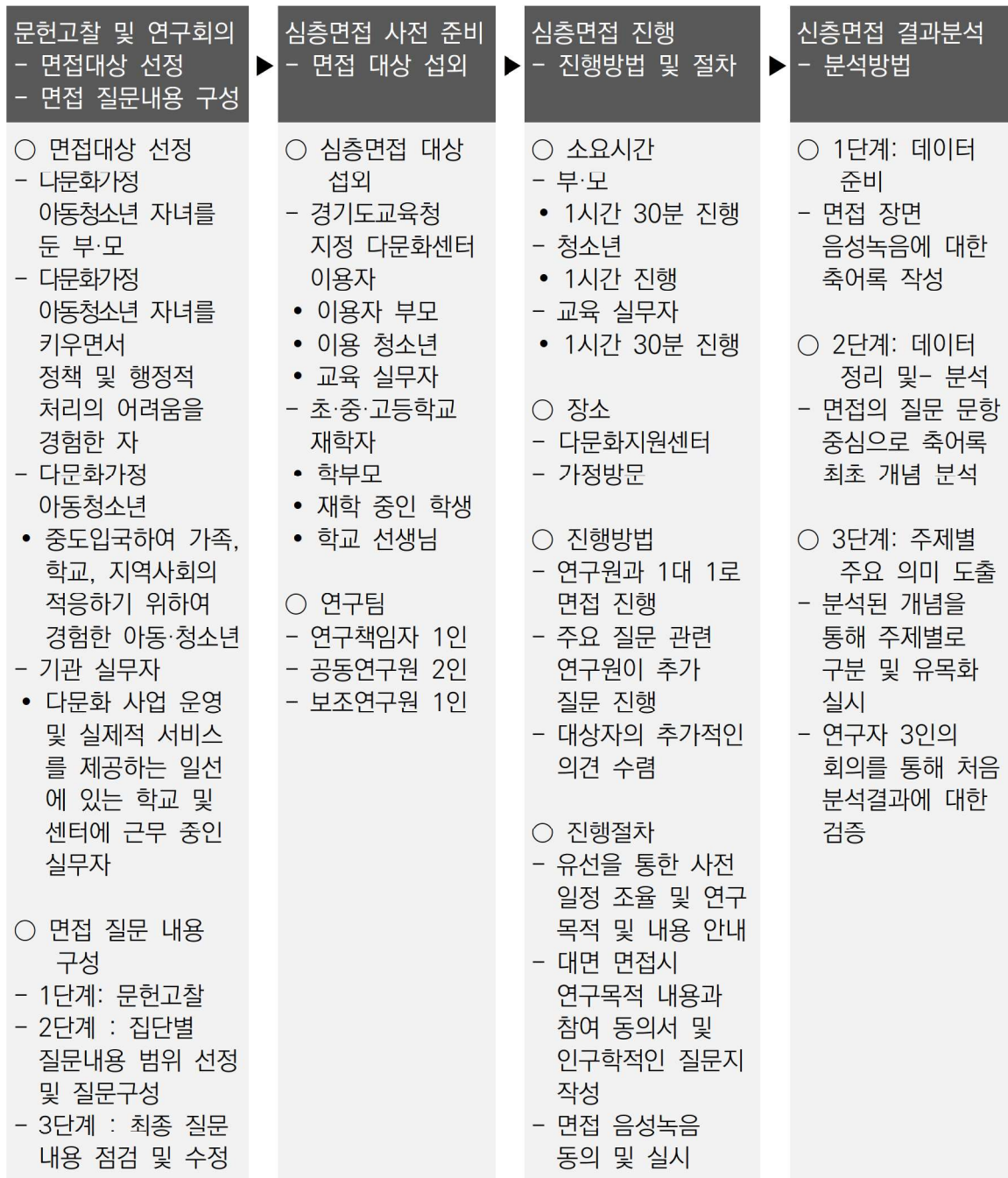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의 정성조사는 경기도 의정부 지역 다문화 가정 내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들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지원 다문화센터, 의정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거나 의정부 관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부모 및 자녀를 대상으로 심층면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문화 가정 내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및 부모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직접 경험한 일상적인 법적 권한의 한계에 관한 경험에 관하여 심층면접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료의 범위와 의미 파악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분류하여 이들의 욕구 및 정책적 필요도를 종합적인 내용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자의 구분은 첫째, 다문화 가정 내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로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 자녀를 키우면서 한국에서 경험했던 법적 및 행정적 처리의 어려움에 대하여 알아보고, 둘째, 아동청소년기에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으로 인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의 서비스 욕구를 인터뷰하였다.

심층면접의 전체적인 과정을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IV-1>과 같다.

〈그림 IV-1〉 심층분석 면접의 과정



1) 심층면접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

(1)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일반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 1명(20%), 어머니 4명(80%)으로 어머니 비율이 매우 높았다. 연령으로 나누어 보면 40대

가 4명(80%)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명(20%)으로 대부분 중년의 연령대로 나타났다. 부모의 국적을 살펴보면 아버지는 한국 출신, 어머니는 모두 결혼 이민자로서 이집트 2명(40%), 베트남과 중국이 각각 1명(25%)씩이었다.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한 기간으로는 3년 이하가 1명(20%), 4년~5년 이하가 3명(60%), 6년~10년 이하가 1명(20%)으로 대부분이 중·단기 거주자로 나타났다. 자녀가 중도입국한 경위를 살펴보면 난민 2명(40%), 모국의 자녀 입양 2명(40%), 재외한국인으로 외국에서 출생 후 입국 1명(20%)이었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일반적 특성은 <표 IV-1>과 같다.

<표 IV-1> 부모 심층면접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	성별	연령	출생국	입국	자녀 수	다문화, 아동청소년 자녀 수	중도 입국 경위
연구 참여자1	여	40	이집트	4년	2	2	난민
연구 참여자 2	여	43	베트남	8년	2	1	입양
연구 참여자 3	남	52	한국	3년	2	2	재외한국인
연구 참여자 4	여	48	이집트	4년	5	5	난민
연구 참여자 5	여	45	중국	5년	2	1	입양

(2)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일반적 사항으로는 남성 4명(20%), 여성 1명(20%)으로 남성 자녀의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비율이 높았다. 연령으로는 중학생 1명(20%), 고등학생 3명(60%), 대학입학 1명(20%)이었다. 청소년의 출생국은 이집트 2명(40%), 베트남 1명(20%), 중국 1명(20%), 태국 1명(20%)로 나타났다. 한국에 입국해 거주한 기간은 4년이 3명(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년 1명(20%), 1년 1명(20%)으로 거주기간은 대부분 짧은 것으로 분석된다. 중도 입국 경위로는 난민 입국이 2명(40%), 모국에서 가정해체 후 어머니의 재혼으로 입양 입국이 2명(40%), 재외한국인으로 외국에서 출생 후 가족과 중도 입국한 경우가 1명(20%)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은 <표 IV-2>와 같다.

〈표 IV-2〉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심층면접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	성별	연령	출생국	한국 입국년도	중도 입국 경위
연구 참여자1	남	14	중국	3년	입양
연구 참여자 2	남	19	이집트	4년	난민
연구 참여자 3	여	19	베트남	4년	입양
연구 참여자 4	남	18	이집트	4년	난민
연구 참여자 5	남	17	태국	1년	재외한국인

(3) 교육 실무자

교육 실무자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본 결과 남자는 1명(17%), 여자는 5명(83%)로 여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근무경력은 30년 이상이 2명(33%), 11년이상에서 20년 이하가 2명(33%), 10년 미만이 2명(33%)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학생들을 담당하는 대안학교 및 다문화 관련 기관의 선생님은 장기 경력자가 많았다. 응답자의 소속기관을 살펴보면 대안학교 2명(33%), 중학교 1명(1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명(17%), 초등학교 1명(17%), 출입국사무소 1명(17%)이었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다문화 학생 담당경력은 1년 이상에서 3년 이하가 3명(50%), 5년이상 7년 이하가 1명(17%), 8년 이상이 2명(33%)이었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교육 실무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IV-3〉과 같다.

〈표 IV-3〉 교육 실무자 심층면접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	성별	소속	교사경력	다문화학생 담당 경력
연구 참여자1	여	대안학교	35	3
연구 참여자 2	여	중학교	10	5
연구 참여자 3	남	출입국사무소	38	1
연구 참여자 4	여	대안학교	15	8
연구 참여자 5	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8	3
연구 참여자 6	여	초등학교	8	8

2) 심층면접 설문 문항의 구성

본 조사는 다문화가족 내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교육지원과 공공 서비스 이용 및 생활 하는데 있어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서비스 욕구를 조사하여 의정부시 다문화 정책을 계획하는데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 가정 부부와 그들의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 그리고 교육 및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심층면담 방식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외국인의 지위로 주민등록 미등록에 의한 'UN 아동권리 협약'에 따른 아동 기본권에서의 교육권, 건강권, 참여권, 발달권에 관한 불이익 사례와 다문화 가정 부모의 자녀 돌봄에 대한 어려움을 살펴보기 위한 다문화 서비스 기관 및 학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 조사는 중요하다. 이러한 질적인 연구는 다문화가정 내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계획 및 공교육 진입 전 지원 프로그램 등 의정부시 중·장기 외국인 가족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자녀가 필요한 제도 및 지원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련자들에 게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그들의 경험적 생활을 인터뷰하고 재구성하는 질적 연구방법의 장점을 활용한 연구이다.

면접조사를 활용한 질적연구 방법은 다문화가정 부모와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자녀가 겪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주관적인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개개인들의 현장 이야기를 풍부하게 공유함으로써 그들에게 필요한 향후 지원제도와 정책을 제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이라는 특성을 띤 집단의 태도와 욕구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과 그들을 지도하는 종사자들이 진술하는 내용은 현재 학교 및 프로그램 전달체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 정책의 실제적 내용의 정보를 기술하기에 대상자의 어려움, 욕구, 문제점, 제언을 도출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하여 면접 질문지는 반구조화하였으며, 종사자들의 일반적 현황을 통하여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본 후 가정생활, 학교생활, 의정부 지역사회의 기관 지원 및 생활, 공공지원 서비스 지원 한계 및 욕구에 대해 질문하였다.

자세한 질문지 구성은 <표 IV-4>, <표 IV-5>, <표 IV-6>와 같다.

〈표 IV-4〉 부모 심층면접 반구조화 설문 문항의 구성

대상	분류	세부질문
부·모	일반적 현황	▪ 연령, 출신국, 입국경위, 자녀 수
	가정 양육 경험	▪ 가정환경 ▪ 양육에 대한 경험 ▪ 자녀와의 가족 관계
	학교 교육 현장 참여 경험	▪ 학교 교육참여의 어려움 ▪ 학교에서 지원받은 자원 ▪ 학교 선생님들께 원하는 지원 ▪ 자녀에 대한 학업 기대감
	지역사회 생활	▪ 지역사회의 지원 ▪ 이웃과의 관계 ▪ 지역사회 만족도
	공공서비스 지원 한계 및 욕구	▪ 해결하기 원하는 내용 ▪ 지원받고자 하는 사항 ▪ 법적 한계로 느껴지는 경험 ▪ 행정 및 정책에 대한 의견

〈표 IV-5〉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심층면접 반구조화 설문 문항의 구성

대상	분류	세부질문
다문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일반적 현황	▪ 연령, 출신국, 입국경위
	가정 환경	▪ 가정환경 ▪ 부모와의 의사소통 ▪ 가족 관계
	학교 생활	▪ 학습의 어려움 ▪ 학교에서 지원받은 자원 ▪ 학교 선생님들께 바라는 점 ▪ 미래에 대한 생각 ▪ 교우관계
	지역사회 생활	▪ 지역사회의 지원 ▪ 이웃과의 관계 ▪ 지역사회 만족도
	공공기관 생활 정책지원 한계와 욕구	▪ 학습권, 건강권, 복지권 등 지원 한계 ▪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 ▪ 법적 한계로 느껴지는 경험 ▪ 행정 및 정책에 대한 의견

〈표 IV-6〉 교육 실무자 심층면접 반구조화 설문 문항의 구성

대상	분류	세부질문
종사자	일반적 현황	▪ 소속, 업무기간, 서비스 지원 경력
	가정생활	▪ 학생의 가정환경 ▪ 부모와의 상호작용
	학교생활	▪ 학생의 학교생활 ▪ 교우관계와 학습태도
	지도경험	▪ 지도의 어려움 ▪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 어려움이 있을 때 조언, 지지, 격려받는 자원
	행정 및 정책제안	▪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행정 및 정책에 대한 의견

2 분석결과

1)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분석결과

(1) 결과

다문화 가정 내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 내용을 분석한 주요결과는 〈표 IV-7〉과 같다. 자녀가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경위로는 결혼 이민자 여성의 재혼으로 인한 전 가족의 자녀를 입양하면서 서류적 절차를 밟기 전 입국시키거나, 정치적 박해로 인한 국제적 난민으로 가족 전체가 입국하는 경우였다. 또한 재외동포로 타국에서 외국인과의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상황에 의해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로서 한국에 정착하는 경우도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는 미성년인 자녀들에게 안전과 돌봄, 교육, 보호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보호자로서 가족이라는 생활공간에서 청소년들의 발달권리에 책임이 있는 중요한 대상이다.

각각의 입국 경위는 다르지만 미성년자인 이들에게 한국에서의 초기 적응에 필요한 것은 가정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가족생활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족 전체가 난민이라는 불안정한 지위가 있는 경우 거주 및 경제적 취약성으로 자녀의 기본 인권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가족 전체의 부적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더구나 입양절차를 통해 자녀를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재혼가족의 경우는 자녀와 재혼부모의 관계적 어려움도 함께 경험한다.

무엇보다 부모 또한 한국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한 경우 자녀들에게 돌봄과 학업, 사회화를 제공할 경험시킬 능력이 부족하기에 미성년 자녀에 관한 돌봄과 교육 제공은 부모에게 매우 힘겨운 사투이다.

다문화 가정 부모들은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에 양육을 하면서 자녀와의 상호작용,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가족의 협력, 가족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범주화하면 ‘경제적 빈곤은 자녀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 ‘일과 자녀 양육의 한계’, ‘가정 내 교육은 포기’, ‘가족 공동체 내 따로 또 같이’로 도출할 수 있다.

〈표 IV-7〉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가정양육 경험에 대한 개념과 범주에 따른 분석

범주	하위범주	개 념
가족 내 자녀 양육과 교육에 서투름 ‘가정돌봄’	경제적 빈곤은 자녀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	6개월마다 비자를 연장하는 6만원의 비용조차 부담스러운 생활
		경제적 생활이 어려운데 아무 지원 없이 자녀를 키워야 하는 상황
		배우자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 경제적 사정 악화
		보증금도 없는 41만원 월세 집에서 4명이 사는 삶
		7명의 가족이 함께 살 집을 구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
		난민으로 생활비를 버는 일이 가장 어렵고 아이들 학원은 생각도 못하는 실정
		고등학교 급식제공이 안 돼서 2년 동안 개인 돈으로 식사하는 것이 어려워 급식을 못 먹음
		자가이지만 반이나 빚을 내서 집을 샀다는 이유로 자녀에 대한 혜택을 못 받음
		돈이 없어 어린이집은 작은 아이만 다니고 다른 자녀들은 못 다님
		아이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학원 보내고 싶은 마음은 희망일 뿐

범주	하위범주	개 념
가족 내 자녀 양육과 교육에 서투름 '가정돌봄'	일과 자녀 양육의 한계	코로나-19로 아이들이 학교를 못가서 가정 내 돌봄 사람이 없음
		맞벌이 하는 도중 남편이 아파 일을 잠깐 못하는 상황에서도 맞벌이 인정을 못 받아 아이를 돌봄교실에 못 보냄
		집에 혼자 둘 수 없어 아이를 회사에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킴
		코로나19 때 다문화지원센터도 문을 닫고 돌봄교실도 안해 줘서 어려움을 겪음
		언어도 안 되는 데 5명의 자녀를 돌보는 것은 어려운 일
		입국한지 4년이 되었지만 집에서 자녀만 돌보느라 한국어는 못해 필요한 훈육은 못함
	가정 내 교육은 포기	가족 중 한국어를 잘 하는 부모가 없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개인 과외를 시켜야하는 현실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은 공부를 많이 어려워하지만 도와줄 가족도 없고 학원도 보낼 수 없어 답답한 마음
		교육은 부모보다 아이가 더 많이 받는 중으로 가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음
		학교 시스템을 모르고 정보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몰라 자녀가 알아서 공부하도록 맡김
	가족 운명체에서 노력하는 자녀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을 입양 했기에 관계를 위해 노력하지만 어색한 가족 분위기
		한국어 통역은 자녀가 오히려 도와주고 있어 고마움
		큰아이도 어렵지만 동생들의 공부도 봐주는 상황
		믿음직한 아들
		입양한 자녀와 언어, 문화가 달라 아내를 통해서 필요한 말만 전달
		미안하면서도 기특한 마음

다음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대상 심층 면접에서 나타난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경제적 빈곤은 자녀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하위범주에 대해서 연구 참여 부모들은 주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경제적 빈곤상태가 되거나 주거의 불안정이 자녀양육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언급했다.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요. 작년에 남편이 같이 일하는데 남편의 직장 다녔어요. 저도 직장 다니니까 아이가 돌봄 교실에 맡겼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올해 아파서 근무도 못했어요. 회사 안 다니는데 직장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 안해서 그럼 아이를 돌봄 교실에 못 보냈어요. 남편은 여전히 일 다니기 힘들어요. (참여자 4)

우선은 주거 환경, 주거 환경 그게 제일 급선무이지 않을까 싶어요. 복지센터에 거기 뭐 가서 이것 저것 알아 봤어요. 다문화 가정에 한해서 주거지 지원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나는 해당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오랫동안 외국에 살아서 소득을 증빙할 방법이 없어요. (참여자 3)

둘째, 「일과 자녀 양육의 한계」라는 하위범주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자리를 찾는다 해도 코로나-19 등 긴급한 상황에서 돌봐줄 자원이 부족하여 회사로 함께 동행하거나, 어머니가 한국어가 부족하고 문화가 달라 양육 방법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아이가 학교를 못가고 인터넷으로 수업을 했어요. 제가 회사 같이 데려갔어요. 진짜 진짜 힘든 상황이었어요. 가끔 여기도 코로나 걸리니까 또 그렇다고 아이를 집에 그냥 마냥 있을 수도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태블릿을 가져가서 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참여자 2)

한국 학교 어려워요. 한국어 잘 모르고 아이가 잘해요. 여자들은 학교 잘 안가요. 집에서 돌봐야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참여자 4)

셋째, 「가정 내 교육은 포기」라는 하위범주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정 내 한국어를 구사하는 부모가 없어 자녀의 학습에는 도움도 되지 않는 상황이며, 학원을 보낼 경제력도 없어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언급하였다.

한국말이 어려워요. 학교는 아이가 다니니까 나보다 더 한국어를 잘해요. 집에서 학교 공부를 가르칠 수 없고, 한국어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요. 나와 동생들 통역도 해주고, 아이가 더 공부를 잘해요. (참여자 4)

아이가 학습을 어려워하지만 그래도 학원을 보내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학원비나 교육 지원은 없어요. 그냥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집에서는 아이를 믿어주는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참여자 5)

넷째, 「가족 운명체에서 노력하는 자녀」라는 하위범주에 대해서 살펴보면, 부모를 대신해 한국어 통역을 해주는 역할을 하거나 가족생활에 책임을 지는 기특한 자녀의 입장과 입양자녀와 부모관계에서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등을 보였다.

아이가 많이 도와줘야 해요. 한국어를 몰라서 집을 구하러 다니는 것도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했어요. 어디에서 연락이 와도 아들이 함께 도와줘요. 아들이 자랑스러워요.
(참여자 1)

아빠와 서로 말하지 않으면 내가 불편하기도 하지만, 이해도 해요. 딸아이가 힘들어 할까봐 말하지 않지만 그래도 힘들텐데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고마워, 행정적인 일을 할때는 아버지가 함께 가야해서 아이가 불편해 하지만, 한국에서 살려면 우리 다 같이 노력해요. (참여자 2)

(2)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 학교 교육에 관한 경험에 대한 개념과 범주에 따른 분석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를 양육 및 교육하는데 있어 학교와 가족의 협력이나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은 자녀의 성장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공간에 대한 경험으로 심층면접 내용을 분석한 주요결과는 <표 IV-8>과 같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은 가정 이외에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어 교육을 받고 공교육에 편입되어 교육받을 권리를 얻게 되는데 대부분을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교유관계와 학습을 학교공간에서 모국과는 다른 문화권의 교육방식과 청소년 문화를 경험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학교 내 규칙과 규율이 존재하고, 가정과 선생님 수업과 학교의 행사 등에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특히, 자녀의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알림장, 과제, 수업자료 등 학교참여 시스템이 존재하며 자녀들의 학업을 하는데 있어 과외활동도 필요하다.

이러한 외국과는 다른 학교 문화를 접하게 되는 다문화가정 부모들은 직접적으로 자녀가 상당히 많은 부분 활동하는 학교의 선생님, 또래관계, 학업시스템, 자녀학업에 관해 적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다.

이러한 경험을 하위 범주화하면 ‘우리아이 학교적응에 가장 필요한 ‘한국어’, ‘아이에게 중요한 건 학교지원’, ‘공공학교 선생님과 소통부족’, ‘다문화 대안학교 선생님’, ‘자녀에 대

한 학업 기대감’, ‘외국인 어머니의 학교참여 소외’, ‘공교육 학교 적응 위한 또래관계는 필수’로 도출할 수 있다.

〈표 IV-8〉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 학교 교육에 관한 경험에 대한
개념과 범주

범주	하위범주	개념
학교와 학습에서의 길고 외로운 사투 ‘학교생활’	우리아이 학교적응에 제일 필요한 한국어	태국에서 중도입국 해서 갑자기 한국말을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
		특정 중학교에 각 나라 애들을 다 모아 선생님 1명이 10여명의 한국어 수준이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비효율적인 방법
		다문화센터에서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한국어 체계는 있지만 자녀들은 공공 학교에서 한국어를 운영하는 것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
		중학교에다 학적을 두고 다문화 대안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시스템
		중도입국 시 여러 국적을 가진 아이들이 딱 한 반에서 한국어 수준과는 상관없이 공부하는 것은 비효율적
		아이들 한국어를 가르칠 때도 외국인들의 학습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주입식 보다는 경험하는 한국어 학습 필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
	아이에게 중요한 건 학교지원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추천제가 필요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무상급식 지원 필요하지만 결국 3학년이 되어야 받을 수 있게 됨
		한국어는 배워야 하지만 4개 국어를 하는 아들의 달란트를 장점화하는 교육 지원 필요
		대학 진학을 위한 아이들에게 심화 한국어반 개설 필요
		다문화 특성화 선생님들이 국적과 문화가 다른 개개인의 학생에게 집중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
		학교 교육 시 숙제를 내주고 관리하며 책임감 있게 학습하도록 돕는 역할
		외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중도입국 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상황이기에 언어라는 재능을 임파워먼트 하는 지지자로서 역할 기대
	공공학교 선생님과 소통부족	학적이만 학교에 두고 한국어는 다른 곳에서 배우기에 학교 선생님의 관심 부족
		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 전환으로 담임선생님과 가정의 정보교류 단절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부모로서 선생님과 소통하기 어려움

범주	하위범주	개념
학교와 학습에서의 길고 외로운 사투 ‘학교생활’	다문화 대안학교 선생님에 대한 믿음	다문화 대안학교 선생님들이 전직 교장선생님이라 교육의 질이 좋음
		다문화 대안학교에서 만난 선생님이 피아노 레슨 등 과외를 시켜주는 도움을 받음.
		선생님은 만나기도 하고 대체로 잘해 줌
		처음 입학 시 면담했던 교장 선생님과 일반 선생님의 소통부족으로 아이 불가능
	자녀에 대한 학업 기대감	아이들이 최대 기본으로 대학은 다녔으면 하는 바람
		한국이든 베트남이든 자녀가 원하는 곳에서 공부하고 일하면 좋겠음
		자녀가 기본으로 대학까지는 갔으면 하고 바라며 한국은 대학은 나와야 명함을 내밀 수 있다고 생각함
		아이가 한국과 모국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기 원함
	외국인 어머니의 학교참여 소외	자녀의 학교 엄마들과 어울리지 못해 아이 교육시키기도 어려움
		코로나-19로 2년동안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를 잘 안가서 모름
		아이의 친구들을 모르기 때문에 엄마들도 모름
		돌봐야 하는 어린 자녀들이 많아 학교에 관심을 갖기는 어려움
		학교에서 보내주는 학습 알림은 한국어를 몰라 무용지물
	공교육 학교 적응 위한 또래관계는 필수	한국어만을 배우는 다문화 센터보다 친구들과 놀 수 있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공교육 학교를 더 선호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아이들이 적고 각각 나라가 달라 아이들과 놀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음
		대안학교에서 적은 인원으로 한국어 공부를 하기 보다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 아이
		한국은 경쟁이 치열한 곳으로 아이가 적응하는 것에 대해 걱정됨
		아이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부딪치고 경험하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학습 단계가 공교육 학교 내에서 특별반을 두어 디테일하게 체계화 되어야 함

다음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대상 심층 면접에서 나타난 자녀 학교 교육에 관한 경험에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아이 학교적응에 제일 필요한 한국어」라는 하위범주에 대하여 한국어가 가장 중요한 학습임에도 중학교에다 학적을 두고 다문화 대안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시스템과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여러 국적을 가진 아이들이 딱 한 반에서 한국어 수준과는

상관없이 공부하고, 10여 명이 다국어 학생이 1명의 선생님과 공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중학교에 보내고 거기에서 이제 편입이 이쪽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알 아봤냐면 중학교로 들어갔는데 한국의 중학교 2학년 코스를 거기에서 받고, 그냥 딱 한글만 배우는 클래스예요. 거기에다가 본을 두고 공부는 다문화 대안학교 이리 가서 하는 거죠. 한국어 공부가 가장 중요해서, 딱 한글만 배우는 거죠. 한글만. (참여자 3)

학교에는 각 나라 애들이 다 와요.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 밖에. 진짜 먼 애는 포천에서 오더라고. 포천에서 2시간을 버스를 타고 거기를 와 갖고 그 각 나라에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은 공부를 좀 하고, 어떤 애들은 아예 완전 다 그냥. ㄱ, ㄴ부터 해야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을 모아놓고 한 반에서 선생님 1명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하는 애들은 안 놀고, 너무 난이도랑 관계없이 가르쳐서 비효율적이에요. (참여자 5)

둘째, 「아이에게 중요한 건 학교지원」이라는 하위범주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무상급식 지원의 필요성과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신화 한국어반 개설의 필요성, 그리고 한국어 포함 다국어 가능한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 아이들의 재능을 특화 지원할 교육 지원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다문화 학교 다닐 때 그 학교 전체 애들이 무료급식을 못 받아요. 학교가 나라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 있어서 그래서 혜택을 못 받았어요. 나중에 고3이 되었을 때 뭐가 되나봐요. 그래서 해줬어요. (참여자 2)

지금 한국에서만 살던 아이들 중에는 영어 안하고 제2외국어 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 외국어 대학교 나와서 막 스펙을 쌓고 해갖고 노력해서 홀랑 외국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는 베트남어까지 해서 지금 4개 언어예요.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특별반을 만들어서 재능을 키워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3)

셋째, 「공공학교 선생님과 소통부족」이라는 하위범주를 살펴보면, 학적만 학교에 두고 한국어는 다른 곳에서 배우기에 학교 선생님의 관심 부족과 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 전환으로 담임 선생님과 가정의 정보교류 단절상태에 대한 어려움,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부모로서 선생님과 소통하기 어려운 한계를 밝히고 있다.

학교는 배정 받았지만 어차피 학교 대신 다문화 대안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만날 일도 없고 선생님들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서 그냥 학교는 학교, 한국어 배우는 대안 학교는 대안학교라고 생각했지요. 또 코로나로 학교도 안가니까 선생님과 이야기할 일이 없었어요. (참여자 2)

제가 학교 보낼 때 직접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일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고 싶지만 한국어도 잘 모르고 얘기할 수 없더라고요. (참여자 1)

넷째, 「다문화 대안학교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하위범주를 살펴보면, 부모들은 다문화 대안학교 선생님들이 전직 교장 선생님이라는 학교 경력으로 교육의 질이 좋을 것에 관한 믿음이 있었고, 다문화 대안학교에서 만난 선생님들의 복지적 마인드로 피아노 레슨 등 과외 등을 연계하는 등의 도움을 받음으로서 신뢰했다.

제가 학교로 데리고 왔었을 때 직접 미팅하고 그랬었거든요. 여기 신한 대학교 선생님들은 다 전직 교장 선생님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인성도 좋으시고, 그거는 내 욕심인 거죠. 그냥 조금만 더 아이들한테 조금만 더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참여자 4)

그리고 우리 아들이 가수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개인적으로 여기 다문화 대안학교에서 자기를 가르쳐줬던 선생님이 피아노 레슨인가 과외를 무료로 잠깐 해주신다고, 그래서 애가 어느 날 피아노 배우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참여자 3)

다섯째, 「자녀에 대한 학업 기대감」이라는 하위범주를 살펴보면, 부모들은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대학은 다녔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치며, 한국사회에서 자녀가 기본적으로 대학까지는 갔으면 하고 바라며 한국은 대학은 나와야 명함을 내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한국과 모국에 긍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했다.

더 깊게 한국인 문화 좀, 언어 그런 거나 언어 그렇고 한국에 대해서 애들이 한국어 조금 더 공부할 수 있게. 적응할 수 있게 전문적으로 추천해주시거나 그런 거에 대해 애는 좀 적응할 수 있게 저는 최대 그냥 대학이 마무리 하고 애들이 나중에 아이들의 능력에 따라서 공부 더 하고 싶은 건 애들은 알아서 하고요. 대학까지는 나왔으면 해요. (참여자 1)

여긴 또 경쟁도 되게 치열하고. 그런데 자기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건 애들 말이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대학교까지는 가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나라에서는 어딜 가든 명함이라도 하나 내밀지. 여기는 한국이니까. (참여자 3)

여섯째, 「외국인 어머니의 학교 참여 소외」라는 하위범주를 살펴보면, 자녀의 학교 엄마들과 어울리지 못해 아이 교육시키기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코로나-19로 2년 동안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 참여 방법은 더욱 모르고, 자녀의 친구들을 모르기 때문에 엄마들과의 교류도 없음을 말한다.

제가 계속 일을 가니까 여기 와서 코로나 때문에 엄마들을 사귀고 누구 나가서 만날 수 없으니까 조금 미안하고 있잖아요. 다들 지금 조심스럽게 가니까. 딱 어려운 시점에 제가 여기 왔으니까. 그냥 뭐 엄마들이 학교에서 엄마들끼리 대화하는 저기 그룹에서 그냥 대화하는 것 뿐이지, 얼굴도 본 적도 없었어요. (참여자 2)

아이가 친구들을 데려온 적도 없고 그냥 학교에 대해서는 아이가 알아서 해서 잘 몰라요. (참여자 5)

일곱째, 「공교육 학교 적응 위한 또래관계는 필수」라는 하위범주를 살펴보면, 부모들은 다문화 대안학교에서 다국적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아이들 소수가 배우는 상황에서 자녀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에 한국어만을 배우는 다문화 센터보다 친구들과 놀 수 있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공교육 학교를 더 선호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다문화 대안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딱 시작을 했는데 학생이 다 합쳐서 3명. 그 중에 2명이 필리핀 애들, 그리고 1명은 20살, 1명은 18살인가 그러고 아들이 이제 막내였어요. 아들이 원래 신한 대학교 대안학교를 이번 년도 한번 더 다니려고 하다가 지금 그냥 원래 있던 동암 중학교 3학년으로 가겠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친구들이 없어서 적응하기 어렵다고,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어를 모르고 아이들이 많아서 힘들더라도 자기보다 2살이 어린 동생들하고 같은 공교육 학교 다니겠다 이거겠죠. (참여자 3)

(3)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지역사회 생활 경험에 대한 개념과 범주에 따른 분석결과

다문화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이 의정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것들은 향후

한국에서 거주하는 지속 가능한 의지에 영향을 주고 이들의 자립과 인적 자원의 역할이 되느냐에 중요한 근간이 된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심층면접 내용을 분석한 주요결과는 <표 IV-9>와 같다.

가정이라는 생활공간에서 자녀의 양육과 학습을 돕는 가족들은 지역사회와 다양한 지원기관들과 상호작용하며 한국 및 지역사회 적응을 해 나간다. 이때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지원기관, 공공 행정기관, 이웃들과 어떠한 관계를 경험했는지가 문화적 배경이 다른 다문화 가족들이 긍정적 적응을 도울 수도 배제와 차별을 통해 부정적 자세를 취할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회, 문화적 배경과 공공 행정적 절차가 너무나 상이한 배경 속에서 성장했던 성인 부모와 아동 청소년 자녀들 모두 지역사회에서의 지원과 긍정적 수용, 차별 등의 경험은 모두에게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의정부시가 지속적으로 살아갈 제2의 고향인 지역사회로서의 적절한 마을 공동체 시스템이 갖추고 공공기관, 복지기관, 이웃 그리고 가정이 관심과 복지 그물망으로서 역할을 하여, 지역 환경 속에 이방인이 아닌 가족으로 적응되어 가는 요소로 기능하는지 확인해 보았다. 이러한 경험을 하위 범주화하면 ‘지역 사회복지 기관의 도움’, ‘이웃 없는 지역사회’, ‘거주를 지속하고 싶은 지역사회’, ‘자녀의 국가 정체성’으로 도출할 수 있다.

<표 IV-9>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지역사회 생활 경험에 대한 개념과 범주에 따른 분석

범주	하위범주	개 념
지속적으로 살아갈 제2의 고향 ‘지역사회’	지역 사회복지 기관의 도움	다문화센터에서 지원받은 공기 청정기
		다문화센터에서 사회통합 적응 프로그램 한국어 프로그램에 참여
		무지개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아이를 위해 한국어 교육 지원을 받음
		의정부에서 교육 및 한국어 프로그램은 참여한 적 있음.
		다문화센터 외에 복지기관에서 도움은 전혀 받은 적 없음
		자녀에게 지원할 문화프로그램이 있다는 정보는 모름
		아이를 키울 때 내가 조금 비용을 내고 출산 도우미 지원받은 경험이 있음.

범주	하위범주	개 념
지속적으로 살아갈 제2의 고향 '지역사회'	이웃없는 지역사회	서로 인사 없는 한국 문화로 이웃 사귀기가 쉽지 않음
		이웃은 없이 그냥 각자 알아서 지내야 하는 한국 문화가 어려움.
		자녀를 키우면서 맞벌이 하니까 양육에 도움을 받고 싶은데 이웃이나 동료 중 도움 주는 인적 자원 부족
	거주를 지속하고 싶은 '지역사회'	다른 나라에 비해 건강보험이 잘되어 있어서 좋음
		의정부시는 차별이 없어 좋음
		지하철과 시장이 가까워서 좋고 사람 좋은 지역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고 의정부에서 계속 살고 싶음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고 서울보다는 의정부가 더 살기 좋음
		살다보니 이집트보다 의정부가 살기 좋아졌고 모든 생활이 좋음
		한국에 들어와 바로 의정부에서 살았기에 제2의 고향
	자녀의 국가 정체성	태국에서 자녀를 낳았지만 한국 국적으로 바로 바꿔 자녀를 키움
		남편하고 아이 모두 귀화 시험 보고 국적 취득하고 싶음
		현재 사회통합 프로그램 6단계까지 공부하고 다음 달에 귀화시험을 보려고 준비중
		아이가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으로 베트남에서 왔지만 한국에서 살고 적응하면 똑같은 한국사람

다음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대상 심층 면접에서 나타난 지속적으로 살아갈 제2의 고향 의정부 지역사회에 관한 경험에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지역 사회복지 기관의 도움」이라는 하위범주에 대하여 부모들은 의정부 다문화센터에서 공기 청정기 및 사회통합 적응 프로그램 한국어 프로그램에 참여고 있다고 하였으며, 반면 타 복지기관에서의 청소년 프로그램 및 학습 프로그램의 참여경험은 전무하며 정보도 모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주변, 이웃들이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많이 도와줘요. 다문화센터에서 쌀 있으면, 채소 있으면, 그리고 가전제품 있으면 줬어요. 공기 청정기도 받아서 좋았어요. (참여자 4)

제가 처음 올 때는 다문화 가정이 지원하는 것도 제가 받은 적도 없지만, 이게 프로그램, 애들 프로그램이 지금 비하면 한국어 위주로 변함없이 똑같아요. (참여자 2)

둘째, 「이웃 없는 지역사회」라는 하위범주에 대해 살펴보면, 부모들은 별다른 이웃 없이 그냥 각자 알아서 지내야 하는 한국 문화가 적응하기 어렵고, 자녀를 키우면서 맞벌이로 양육에 도움을 받고 싶어도 이웃이나 동료 중 도움 주는 인적 자원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문화생활에서 달라요. 직장 다니면 서울에 있을 때 동료들이 많으면 마음이 통하든지 안 하든지 인사하잖아요. 의정부는 사람 많을 때는 인사해.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인사하고 어떤 사람은 인사 안 해요. 젊은 친구들이 따로 어른한테 인사 안하고 무서워요. 어른이 말하면 같은 엘리베이터 타는데도 인사 안 해요. 그냥 각자 알아서 지내요. (참여자 2)

이제 애들 학교 가고 이랬을 적에도 그렇고 뭔가 어머니가 못 챙기는게 있으면 누가 도와주거나 하는 사람 없어요. 옆에서. 남편 말고 이웃이나 동료 중에 이런 사람 도움을 받은 적은 없어요. (참여자 5)

셋째, 「거주를 지속하고 싶은 ‘지역사회」라는 하위범주에 대해 살펴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은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좋고, 의정부시는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이지만 배려는 필요하며, 지하철과 시장이 가까워서 좋기에 지속적으로 의정부에서 거주하고 싶은 심경을 밝히고 있다.

아마 경기도 북부 지역 중에서 의정부가 꽤 큰 소비도시일 거예요. 여기도 은근히 외국인 다문화 가정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식구는 내가 케어는 하지만 내가 없을 때는 우리 와이프하고 애가 바깥에 나가서 나랑 다녀본 데만 가요. 외국인들에게 차별은 없어요. 그런데 굳이 바람이라면 외국인들을 위한 조그만한 배려, 길 안내판 등 외국어 표기가 필요해요. (참여자 3)

넷째, 「자녀의 국가 정체성」에 관한 하위범주에 대해 살펴보면, 가족 모두 귀화 시험으로 국적 취득하고 싶으며, 귀화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도 있고, 아이가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으로 들어왔지만 한국에서 살고 적응하면 똑같은 한국 사람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왜냐면 애 시민권이 없으면 애들도 힘들고 저도 또 힘들어요. 서류상도 그렇고 애는 혼자서 알아서 할 수 없는 것 많아요. 엄마가 항상 저기 보충해줘야 돼요. 귀화를 해서 한국에서 살면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귀화시험을 준비해서 귀화했어요. (참여자 2)

아이도 그렇고 저도 그랬어요. 지금은 저는 한국에서 살면 제가 한국의 시민으로써 그냥 갖고 싶고 여기서 계속 생활해 지내니까 내가 한국 사람처럼 그냥 문화도 적응하고 생활 좀 똑같이 생활을 진행하는게 좋겠습니다. (참여자 5)

(4)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공공서비스 지원 한계와 욕구에 대한 개념과 범주에 따른 분석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공공 서비스 지원한계와 욕구에 대한 심층면접 내용을 분석한 주요결과는 <표 IV-10>과 같다. 난민입국, 입양 등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배경이 다양한 다문화 가정은 자녀를 교육하는데 있어 공공의 지원 및 복지기관들의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것은 필요하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자녀들의 건강한 발달에 필요한 식사, 주거, 의료, 교육에 대한 공공기관에서의 지원은 매우 필요한 상황이며, 취약한 상황에서의 복지적 지원도 중요하다. 이러한 지원을 위해서는 등록된 외국인 이거나 귀화 등을 통해 한국 국적의 취득이 우선시 되어야 할 꼭 필요한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혹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몰라 지원받는 것에 한계를 경험하기도 한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에서 서비스지원을 못 받은 경험과 필요한 공공지원에 대한 욕구를 확인해 보았다.

이러한 경험을 하위 범주화하면 ‘공공기관지원 배제 경험’, ‘건강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자녀 프로그램 지원 욕구’로 도출할 수 있다.

<표 IV-10>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공공서비스 지원 한계와 욕구에 대한 개념과 범주에 따른 분석

범주	하위범주	개념
학교 및 공공서비스 지원 한계와 욕구	공공기관 지원 배제 경험	경제적, 제도적 지원 없이 한국어 교육만을 지원하는 다문화 지원
		귀화하기 이전까지 재난 지원금 등 혜택을 받지 못함
		자녀 행정처리에 인증이 필요할 때 남편이 주민센터에 무조건 가야 하는 불편함
		정보를 얻기 위한 정부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가입이 어려움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의 급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은 아이들과 한국출생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서로 다른 혜택

범주	하위범주	개념
학교 및 공공서비스 지원 한계와 욕구	공공기관 지원 배제 경험	한국생활에서 서류 처리가 복잡해 국적을 선택해서 귀화
		난민인정이 안 되어 G1 비자를 6개월마다 연장하는 것의 반복
		생활과 서류를 떼는 것이 어려워 귀화 말고는 방법이 없음
		공공 기관에서는 다문화 가정에 지원하기 위한 기준점이 너무 높고 한국에서 소득을 증빙할 자료가 없어 지원받는 것을 포기
		5명의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다자녀와 아버지의 낮은 일용직 소득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될 수 없는 상황
	건강할 권리	자녀가 아파 입원하는 상황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어 동사무소에 여러번 요청했던 경험
		일시적 질병 등으로 부모가 일할 수 없을 때 자녀양육에 대한 긴급 지원 필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를 입양절차로 호적에 올리기 전 건강보험 미적용
	교육받을 권리	의정부는 공기가 좋지만 어린이집 교육과 지원 환경은 안 좋음.
		한국의 문화, 언어와 적응할 수 있는 교육 정보 및 대학에 대해 추천해 주는 제도 필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아이들이 대학진학을 위해 전문 한국어반 개설 필요
		귀화 없이 대학진학 방법은 유학생 신분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
		한국어가 부족하기에 대학을 진학할 연령에는 심화 한국어 지원 필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후 귀화를 해야 대학진학 가능
	자녀 프로그램 지원 욕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미술, 만들기, 체험 등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기를 원함.
		한국어를 학습 뿐 아니라 역사체험 등 활동을 통해서 교육적 적응을 지원해 주기를 원함.
		적응을 위해 아이들이 음식 만들거나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국적이 다른 아이들도 많으니 서로 화합되고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

다음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대상 심층 면접에서 나타난 지속적으로 학교 및 공공서비스 지원 한계와 욕구에 관한 경험에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공공기관지원 배제 경험」이라는 하위범주에 대하여 자녀 행정처리에 인증이 필요할 때 남편이 주민센터에 무조건 가야 하는 불편함으로 행정처리를 미루거나 경제적, 제도적 지원 없이 한국어 교육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자녀를 둔 아버지의 낮은 일용직 소득에만 의존하여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될 수 없는 현실상황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런 거는 그때는. 인증서 있긴 있는데 그런데 내가 나라에 애기는 센터, 주민센터 가면 남편도 있어야 하는 상황도 있어요. 또 애기들 인증서 누가 발급받아야 남편이 시간내서 있어야 하고 남편 와서 좀 해야 돼요. 그런 거 처음부터 있어요.

남편 혼자 일하고, 돈이 없어 어려워요. 한국어 늘지 않고 아이들에 대한 도움 필요해요. (참여자 5)

둘째, 「건강할 권리」라는 하위범주에 대하여는 호적에 올려 한국인으로서의 자격이 갖추어지기 전에는 의료보험 혜택이 어렵고 자녀가 아파 입원하는 상황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동사무소에 여러번 요청했던 경험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입양해서 서류가 되기 전 왔는데 한국인으로 귀화 자격이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의료보험도 안 되었어요. 미성년자들은 빠르게 의료보험과 교육은 시켜야 된다고 봐요. (참여자 2)

그리고 건강 보험은 직장 다녀야 건강 보험을 받을 수 있어요. 남편만 일하는데 난민 신청하면 계속 활동 허가 받아야 돼요. 가족 모두를 위해 남편만 일했기 때문에 아버지만 향상.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 모두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요.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동사무소에 가서 부탁하고 줄랐어요. (참여자 1)

셋째, 「교육받을 권리」라는 하위범주에 대하여 한국의 문화, 언어와 적응할 수 있는 교육 정보 및 대학에 대해 추천해 주는 제도 필요하며, 특히 귀화 없이는 대학에 진학할 수 없는 배울 수 있는 권리의 한계에 대한 어려움을 전했다.

얼마 전 귀화되었고,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지금 다문화 가정에서 아이와 엄마는 중도 입국 때문에 대학생이 되려면 한국 아이들처럼 그냥 시험도 하고 시험하고서 들어가는 그 거 대상으로 되더라고요. 그런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이런 혜택 하나도 없어요. 대학. (참여자 5)

중도 입국인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한국식으로 다 봐야 대학을 들어가요? 그냥 애들처럼 똑같고. 그런데 지금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 기준이 다문화 가정에 혜택을 주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데가 아예 그냥 똑같이 받고 그냥 되는데 있더라도 아이가 지금 중도 학생이기 때문에 부모님까지 나이가 아니라서 다문화 가정에 이게 인정을 해주지 않잖아요. (참여자 2)

넷째, 「자녀 프로그램 지원 욕구」라는 하위범주에 대하여 적응을 위해 아이들이 음식 만 들거나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강의식 위주에서 벗어나는 프로그램 지원을 요구하며, 특히 국적이 다른 아이들도 많은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교실의 특성상 다국적 자녀들이 서로 화합되고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주입식, 해외에서는, 그러니까 학교를 가는데 애들이 재미있어 해요. 주입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쉬운 얘기로 문법으로 배우잖아요. 이거는 안돼. 그러니까 해외에서 오래 학교를 다니던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우선 학교에서 질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빠르게 한국에 적응시키는 거는 시청각 교육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음식이라든지 역사체험으로 한국문화를 빠르게 이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참여자 3)

(5)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행정 및 정책변화에 대한 의견에 대한 개념과 범주에 따른 분석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행정 및 정책변화에 대한 의견을 심층 면접하여 내용을 분석한 주요결과는 <표 IV-11>과 같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대상과 목적이 다른 특성을 갖는다. 가정환경 안에서 아동 청소년의 권리와 복지를 살펴봐야 함에 따라 부모와 가족 건강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의 대부분이 아동 청소년 자녀에 대한 건강한 발달권, 학습권, 건강권, 참여권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그렇기에 다문화 가정의 부모를 아동 청소년의 지원 정책과 무관할 수 없으므로 이들의 정책적 요구는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험을 하위 범주화하면 ‘자녀 생활에 대한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행정 및 정책에 대한 의견’으로 정리하였다.

〈표 IV-11〉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행정 및 정책변화에 대한 의견에 대한
개념과 범주에 따른 분석

범주	하위범주	개념
행정 및 정책변화에 대한 의견	자녀 생활에 대한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행정 및 정책에 대한 의견	부모가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들이 귀화되어 주민등록을 취득하기 전에도 학습, 건강, 발달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함
		청소년들은 의정부시에서 명예 의정부 시민으로 받아 주어 시민으로 배제없이 교육받기를 바람
		18세 미만의 청소년, 미성년자들은 빠르게 귀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교육과 건강보험 등 혜택을 받는 것을 우선 추진
		외국인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갖는 시민이면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아이도 한국 국적을 받는 것에 유연한 법적 변화 필요
		다문화 가정이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기에 생활비나 학비 관련해서 지원책 마련 필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아이들은 미성년자이기에 비자연장 기간을 길게 주어 정서적으로 안정성 제공
		의정부시에서 대학 입학 시 아이들의 글로벌한 언어적 재능을 고려해서 장학금이나 특화해서 지원하는 인재육성 지원 필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아이들의 교육복지 지원 가능토록 포용적 교육지원 마련
		의정부시는 외국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를 위해 도로나 길 등 다양한 언어, 픽토그램, 유니버설 디자인 표기 필요
		다문화 가정 한국출생 아이들처럼 아동 청소년의 인권을 위해 그들과 동등한 혜택 받기를 원함

다음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대상 심층 면접에서 나타난 행정 및 정책변화에 대한 의견에 관한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자녀 생활에 대한에 대한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행정 및 정책에 대한 의견 공공기관지원 배제 경험이라는 하위범주에 대하여 부모가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들이 귀화되어 주민등록을 취득하기 전에도 학습, 건강, 발달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의정부시는 명예시민 제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미성년 아이들은 아동권리에 관하여 지원받기를 원했다.

또한 의정부시에서 대학 입학 시 아이들의 글로벌한 언어적 재능을 고려해서 장학금이 나 특화해서 지원하는 인재육성 지원하여 다문화 아이들을 세계 시민으로 키우고 의정부시와 모국에서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 성장지원하는 것에 의견을 제시되었다.

중도 입국하는 아이들이 두 배 힘이 드는데 지금 중도 언어 아니더라도 의정부시에서 명예시민으로 인정해 줘서 아이들이 교육, 의료, 급식 등 빠르게 지원받았으면 해요. 앞으로 대학 들어갈 때 추천하는 애들도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참여자 5)

한국어, 영어, 태국어 등 4개를 번역까지 다 해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는 조금 재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에서 좀 오래 살다가 온 아이들 중에 외국어 실력 꽤 괜찮은 아이들은 그냥 그런 쪽으로 좀 밀어서 왜, 의정부시에서도 그런 서류 같은 거 막히고 그런 일 있을 거잖아요? 뭐 번역도 하고, 외국과 교류하고 그런 쪽으로 좀 지원해서, 어떻게 보면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대학 갈 때까지 이런 식으로 의정부시에는 이 아이들의 재능을 살려 특화되게 장학금이나 지원을 해서 자원화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3)

애 나이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그런데 보통 청소년 18살까지는 아이 청소년, 미성년자이잖아요. 그럼 애들이 오자마자 귀화 바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애들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교육도 그렇고. 엄마도 뭐 하면 애들이 뭐 좀 해주고 같이 나와서 도와주는 서류들이 많아요. (참여자 2)

2)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분석결과

(1)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가정생활 경험에 대한 개념과 범주에 따른 분석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의 가정생활 경험에 대한 심층면접 내용을 분석한 주요결과는 <표 IV-12>와 같다. 아동의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이유는 아동 스스로의 결정이기보다는 부모의 결정으로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아동이 어떠한 이유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이 확정되었든 간에 가족 내 구성원의 도움이 한국생활과 학교생활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부모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에게 어떠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아동의 상황은 매우 격차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난민으로 가족 모두가 입국한 경우 자녀나 부모나 모두 한국어가 낯설고 각자

적응해야 하는 사회, 역할이 다름에 따라 때로는 자녀가 오히려 빠른 한국어 습득 및 교육으로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 전치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게다가 입양을 통해 재혼가족으로 편입한 청소년의 경우, 한국어 학습, 학교 적응이라는 어려운 과제 속에서 가족의 원만한 의사소통과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 이중, 삼중의 고초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족 내 상호작용에 관한 자녀의 입장에서 경험의 확인해 보았으며, 이러한 경험을 하위 범주화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 ‘가족이 직면한 어려움’, ‘가족 내 부모와의 상호작용’으로 도출할 수 있다.

〈표 IV-12〉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심층면접의 주요 결과

범주	하위범주	개 념
가정에서의 보호받을 권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	형제자매들이 많아 어머니는 일하지 못하여 아버지 혼자 직장을 다녀 생활이 어려움
		아버지의 비자도 6개월에 한번 연기해야 하고 활동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잘 안 받아줘 장기 직업을 갖지 못함
		난민생활과 경제적 어려움, 5명의 형제, 자매의 질병 때문에 매우 힘든 생활이 계속됨.
		질병으로 일하지 못하는 아버지로 어머니가 가정 경제를 책임짐
	가족이 직면한 어려움	아버지가 정치박해를 받아 한국으로 난민이 되어 입국함
		가족 모두 일주일 동안 좁은 방에서 난민 신청을 위해 인터뷰로 고생
		7명의 많은 가족과 난민 신분으로 주거지를 구할 때 자주 거절당함
	가족 내 부·모와의 상호작용	한국어가 서투른 어머니 대신 통역까지 해야 하는 자녀 무게감
		아버지랑 어려움에 대해 대화하지 않고 나의 역할은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
		장남으로 아버지와 가족의 생활을 위해 주거를 알아보는 등 같이 해결하기 위해 소통
		동생들 학습과 생활통역 등 가족에 대한 책임감 있는 역할
		고생하시는 부모님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
		입양으로 입국했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는 그냥 그런 편
		부모님과 말 안하기 때문에 대면 대면한 사이
		집에서 가족들과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음.

다음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에서 나타난 가정에서의 보호받을 권리에 관한 경험에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에 대한 하위범주에 대해 살펴보면, 형제자매들이 많아 어머니는 일하지 못하고 아버지 혼자 직장을 다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의 고통과 아버지의 비자도 6개월에 한번 연장해야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잘 안 받아줘 장기 직업을 갖지 못하는 현실에서 더욱 취약해 질 수 밖에 없는 힘겨움을 밝히고 있다.

일단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가족이 7명이니까. 아버지만 직장에 다녔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지금까지도요,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일구할 때 비자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기한이 6개월이거든요, 항상 일구할 때 잘 안 받아줘요. 6개월이니까. (참여자 2)

둘째, 「가족이 직면한 어려움」에 관한 하위범주에 대해 살펴보면, 7명의 가족 모두가 좁은 방에서 난민 신청을 위해 장기간 인터뷰로 고생하고, 주거지를 구할 때 난민으로 거절당하면서 주거에 안정성이 떨어져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이 낮아지는 위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일단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공항에서 한 일주일 있었는데 일주일동안 좁은 방에서 방이 좁았고 인터뷰도 많이 해서 그것 좀 힘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집구할 때 항상 가족이 7명이니까 안 된다고 한 적도 있고, 그리고 가족이 많다 보니까 쓰리 룸을 구해야 되는데 항상 비싸고 거절당한 적이 많았어요. (참여자 2)

셋째, 「가족 내 부모와의 상호작용」이라는 하위범주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어가 서투른 어머니 대신 통역까지 해야 하는 부모와 자식의 역할이 전이된 경험과 새아버지와 어려움이 있다 해도 대화하지 않고 나의 역할은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등 가족 간 상호작용에 대해 밝혔다.

지금 저도 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지만 4년 동안 계속 제가 통역을 해줘야 되어서, 왜냐면 한국말을 잘해서. 엄마 통역도 해야 되고, 동생들도 봐줘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하고....., (참여자 4)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데 아빠는 우리한테 얘기 안 해요. 사이는 좋지도 않아요. 저 엄마, 아빠한테 별로 없어요. 같이 얘기하지 않아서. 많이 얘기하지 않아서. 그냥 우리는 공

부만 하는 역할이에요. (참여자 3)

(2)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경험에 대한 개념과 범주에 따른 분석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의 학교생활 경험에 대한 심층면접 내용을 분석한 주요결과는 <표 IV-13>과 같다. 학교는 청소년에게 있어 가정 이외에 가장 많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장소로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라는 규칙 있는 생활공간에서 또래 청소년과 선생님과 학습과 사회화를 배우는 곳이다. 학교의 규칙과 학습과정은 한 국가의 문화적인 측면이 집약되어 학습되고 전수되는 공간이며, 또래와 선생님과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화를 배우기에 다른 문화권에서 오랫동안 학습되어 온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에게는 새로운 배움의 기회인 동시에 스트레스를 받는 장소이기도 하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고, 어떤 관계를 경험하느냐에 따라 적응의 정도가 결정되어 지고 이러한 적응은 향후 청소년의 학업 기대감, 미래에 대한 설계 등에 매우 민감하게 작용되며, 이는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생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래에 한국사회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타국과의 교류할 수 있는 글로벌한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사회적 자원을 지원해야 할 취약한 집단으로 성장하는가는 현재의 학교생활이 매우 중요한 맥락이다.

학교생활에서의 교육, 또래친구, 선생님에 관한 경험을 확인해 보았으며, 이러한 경험을 하위 범주화하면 ‘학습의 가장 큰 어려움의 시작 ‘한국어’’, ‘학교수업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 ‘학교와 병행한 다문화 대안학교’, ‘수업적응의 중요한 열쇠 ‘선생님’’, ‘학생을 침묵하게 만드는 선생님’, ‘미래에 대한 희망 ‘꿈’’, ‘적응을 돕는 차별 없는 친구들’, ‘교류 없는 학교생활로 단절된 친구관계’로 도출할 수 있다.

<표 IV-13>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경험에 대한 개념과 범주에 따른 분석

범주	하위범주	개념
일상의 대부분을 생활하는 학교생활과 적응	학습의 가장 큰 어려움의 시작 ‘한국어’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니라 한국 친구들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장기간 공부를 했는데 한국어의 한계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받는 스트레스

범주	하위범주	개념
일상의 대부분을 생활하는 학교생활과 적응	학습의 가장 큰 어려움의 시작 '한국어'	제일 많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한국어 의사소통
		언어를 잘 몰라서 2년 학년을 낮춰서 진학하여 학교 다님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니면서 제일 어려운 건 한국어
		한국어를 사전에 배우지 않고 바로 일반 학교로 들어가 어려움
		공부는 하고 싶지만 한국어를 몰라서 공부가 어려움.
		학교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수업내용을 못 알아들을 때
		한국어를 알기 전에 많이 어려웠지만 언어를 알고 난 뒤에는 편안해짐
	학교수업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	학습을 따라가기 힘들어 시험이 제일 힘들.
		가장 어려웠던 점은 학원을 다니지 않고 스스로 공부해야 했다는 점
		제일 어려웠던 과목은 국어였고 독서하려고 노력해서 극복함
		학업을 따라가기 위한 노력은 교재 책 내용은 대부분 번역기를 돌려 확인함
		시험은 기출문제를 많이 풀고 문제집을 많이 사서 공부함.
		온라인 수업은 숙제가 많아서 어렵고 공부가 잘 안 되었음
		대학을 준비하기 위해 주로 TV EBS 공부를 많이 함
		태국으로 돌아가고 싶기도 하지만 적응하려고 노력함
	학교와 병행한 다문화 대안학교	다문화 대안학교에서 1년간 한국어 학습을 지원받음
		처음 입국해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인천에서 지냈기 때문에 일반학교에 전학가 적응하기 어려움
		일반 학교에는 학적만 두고 한국어는 다문화 대안학교에서 배움
		한국어는 대안학교에서 배우고 일반학교는 한 달에 한번 학교를 가고 수학, 과학 사회 역사는 온라인으로 배움
	적응의 중요한 열쇠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은 모두 잘 배려해줌
		선생님들은 잘 도와줌
		공부를 좀더 쉽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면 하는 바람
		담임선생님도 도와주셨고 국어 때문에 선생님이 많이 힘들어 함
		대학 입학할 위해 자기소개서, 수시전형으로 선생님에게 도움을 받음

범주	하위범주	개념
일상의 대부분을 생활하는 학교생활과 적응	학생을 침묵하게 만드는 선생님	한국말을 사용해서 벌점을 받는 것은 차별이라 생각함
		모국어를 사용하면 안되고 한국말만 사용해야하는 학교의 규칙
		한국말만 사용해야 하는 학교 규칙 때문에 학교에서 점점 말을 안하게 된 상황
		학교 선생님이 무섭게 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이 말을 안듣는 이유
		학교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는 것이 중요
	미래에 대한 희망 ‘꿈’	4개월 뒤 귀화시험에 합격하여 대학에 가고 싶음.
		한국에 들어와서 인터뷰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미래에 외교관이 되고 싶다는 꿈이 생김
		한국에서는 대학까지는 진학하고 싶음
		대안학교 선생님의 피아노레슨을 받고 가수가 되고 싶은 꿈 갖게됨
		미래에는 경찰이 되고 싶고 대학까지는 진학하고 싶은 마음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은 소망
		장래희망은 외교과에 입학해서 외교관이 되는 것
		이화여자대학교 외교학과에 가고 싶지만 정보도 얻기 힘들고 시험보기에도 힘들까봐 두려움
		미래에 꿈은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통역하는 통역사
		대학은 한국교육 관련하여 전공하고 싶음
	적응을 돕는 차별 없는 친구들	의정부 중학교에 입학한 후 적응하며 친구들과 차별없이 지냄
		학교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는 등 매우 잘 지냄
		학교는 언어는 어렵지만 친구들이랑 지낼 수 있어서 좋음
		초등학교 때 친구하고 잘 지냈고 중학교도 적응 중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학생이라고 친구들이 차별하지 않고 잘 도와줌
		처음에 궁금증이 많아 친구들과 다른 문화에 대해 물어보면서 적응함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한국말을 잘하게 되어 친구들과 더 잘 지냄

범주	하위범주	개념
일상의 대부분을 생활하는 학교생활과 적응	교류없는 학교생활로 단절된 친구관계	코로나로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온라인 수업을 해서 친구들과 교류없이 거의 집에만 있었음
		고등학교 1학년 학적은 학교에 두고 대안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느라 친구들과 교류가 없었음
		학교에서 생활 중 좋았던 기억은 별로 없음
		학교에서 친구들과 나이차가 나기 때문에 관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든 나의 성격이 적응하는데 어려움
		같은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학생들이라도 베트남과 중국은 사이가 안 좋음
	학업성취로 자신감 회복	한국어가 어렵지만 일반학교에서 과학으로 상을 타서 학업에 성공적 경험이 큰 힘
		한국에 와서 한국어 실력이 80% 늘어 스스로 부듯한 마음
		대안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난후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학교에서도 적응하기 쉬웠음.
		고등학생 때 중도입국 해 낯설었지만 다문화 학교라 적응하기가 좀 더 수월했음
		한국어를 극복하고 수시로 대학에 합격하여 입학을 앞둔 자랑스러운 나

다음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의 학교생활 경험에 대한 심층면접에서 일상의 대부분을 생활하는 학교생활과 적응에 관한 경험에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학습의 가장 큰 어려움의 시작 ‘한국어’」 하위범주에 대하여 청소년들은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니라 한국 친구들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힘들었으며, 장기간 공부를 했는데 한국어의 한계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아 가면서 한국어와 교과목 두 가지의 학습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일단 학업 스트레스가 많아요, 일단 제가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다른 친구들보다 두 배 공부해야 그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참여자 2)

시험 기간에 한 엄청 열심히 했고 장기간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원하는 성적을 못 받으면 그렇게 있어요. 실망하고 다시 공부 안하고 싶고. (참여자 2)

한국 들어오기 전 태국에서 한국어 과외를 했는데 한국어 잘 안써서 잊어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몰라서 어려워요. 좀 한국말 안 나와요. 조금은 어렵지만 그냥 좋아요. (참여자 5)

둘째, 「학교수업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하위범주를 살펴보면, 가장 어려웠던 점은 학원을 다니지 않고 스스로 공부해야 해야 했고, EBS를 통해 공부를 했으며, 어려운 과목은 국어였고 독서하려고 노력해서 극복하거나, 교재 책 내용은 대부분 번역기를 돌려 확인하는 등 경제적 비용이 들지 않도록 스스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했다.

수업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공부, 제가 학원 안 다녀서 그냥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려운 점 있으면 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했어요. 학습은 저는 기출 문제 많이 사보니까 많이 풀어요, 집에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참여자 2)

저 TV에서 공부했어요. EBS 보고 했어요. 모르는 것들은 그냥 다 번역기를 돌렸어요. 인터넷 강의도 듣고. (참여자 4)

셋째, 「학교와 병행한 다문화 대안학교」라는 하위범주를 살펴보면, 대부분 다문화 대안 학교에서 1년간 한국어 학습을 지원받고 이런 경우 한국어는 늘지만 학적만 학교에 두고 대안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기에 일반학교에 다시 전학을 가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국어 몰라서 좀 어려워요. 공부가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고1 때 신한대학교 대안학교 다닌 후에 학교가 잘해 줬어요. (참여자 3)

그 친구들이 인천에 있었을 때 외국인 친구들 많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편해서 다시 일반 학교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참여자 2)

친구들과 놀 수 있는 학교에서 공부하는게 더 좋아요. 대안학교는 3명밖에 없고 태국 애들이었는데 자기들만 서로 얘기해서 축구나 놀수 없었고, 그래서 한국어가 안되도 학교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참여자 5)

넷째, 「수업적응의 중요한 열쇠 ‘선생님」이라는 하위범주를 살펴보면, 선생님들은 대부분 좋은 분들이었고, 담임선생님이 국어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면서도 학생을 도왔거나,

대학 입학을 위해 자기소개서, 수시전형을 지도하는 등 선생님에게 도움을 받아 학교수업에 적응할 수 있었음을 말했다.

저 때문에 특히 담임선생님이 진짜 많이 많이 고생했어요. 특히 국어선생님이. 선생님이 도와줬어요. (참여자 1)

제가 그냥 자기 소개서 많이 쓰고 선생님들한테 고쳐줘 달라고 하고. 제가 수시로 시험을 보니까 점수가 중요해요. 대학시험 준비하고 면접 보는데 좀 많이 힘들어요. (참여자 3)

다섯째, 「학생을 침묵하게 만드는 선생님」이라는 하위범주를 살펴보면, 모국어를 사용하면 안 되고 한국말만 사용해야하는 다문화 학교에서의 학교의 규칙에 대해 차별이라고 생각하였으며 학교 선생님이 무섭게 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이 말을 안 듣게 하는 이유라고 말한다.

학교에서 한국말 해야 돼요. 외국말 하면 안 되고 모국어를 쓰면 벌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 학교에서 말 안 해요. 담임선생님이랑 상담하고 담임선생님은 말 왜 안 하냐고 해요. 제가 한국말을 못해서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이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셔서 그래서 한국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참여자 3)

저희 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중국 사람한테 좀 무서워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생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연구 참여자1)

여섯째, 「미래에 대한 희망 ‘꿈’」이라는 하위범주를 살펴보면, 아이들은 대부분 대학까지 진학하는 것을 꿈꿨으며 한국에 들어와서 인터뷰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미래에 외교관이 되고 싶다는 꿈이 생기거나 경찰이 되기를 원하였으며,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귀화 시험에 합격하여 대학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인터뷰도 오래 하고 이러면서 외교관들을 좀 많이 만났었어요. 한국에 와서 몇 있는 것 같고 또 정치적으로 한국에 왔기 때문에 외교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2)

한국어 통역할 수 있는 대학에 진학을 준비했고, 지금 크레이티브 인문 학부에 합격했어요. 한국어 통역을 해주기 위해서 한국어 교육학과를 선택을 해서. 통역사가 되고 싶어

요. (참여자 3)

대학까지 가고 싶어요. 경찰이 되고 싶어요. 경찰이 멋있기도 하고,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참여자 4)

일곱째, 「적응을 돕는 차별 없는 친구들」이라는 하위범주를 살펴보면, 의정부 중학교에 입학한 후 적응하며 친구들과 차별 없이 지냈으며, 학교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는 등 매우 잘 지내고 학교는 언어는 어렵지만 친구들이랑 지낼 수 있어서 좋은 공간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좋았던 점은 학교에 있으면서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느껴본 적 없어요. 그냥 한국인 친구들과 똑같이 지냈던 것 같아요. 매일 점심시간에 축구도 하고 제가 1학년 때 한국어 배우러 신한대에서 1년 동안 공부했었거든요. (참여자 2)

3학년 되니까 학교도 나오고 갑자기 친구들이랑 안 만났는데 갑자기 그때 한국말 웬지 잘해졌어요. 잘하게 되니까 애들이 갑자기 친해지고 많은 걸 같이 했고 좀 재미있었어요. (참여자 3)

여덟 번째, 「교류 없는 학교생활로 단절된 친구관계」라는 하위범주를 살펴보면, 코로나로 고등학교 2학년부서는 온라인 수업을 해서 친구들과 교류 없이 거의 집에만 있어 단절되었거나 학적은 학교에 두고 대안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느라 친구들과 교류가 없어서 겪는 단절된 친구 관계를 언급했다.

그 다음에 2학년 때 코로나가 터져 가지고 학교를 많이 안 다녔었어요. 그래서 2학년 때 조금씩 상황이 좋아지면서, 온라인 수업을 했고 친구도 만날 수 없고, 그냥 집에서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학교에 가게 되고 좋아요. (참여자 4)

초등학교 2학년부서 6학년까지 다녔어요. 학교에서보다 신한대학교 대안학교에서 한국어 공부해서 친구들과 놀 수가 없었어요. 학교에서 처음부터 아예 한국인 친구들과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1)

아홉 번째, 「학업성취로 자신감 회복」이라는 하위범주를 살펴보면 한국어가 어렵지만 일반학교에서 과학으로 상을 타서 학업에 성공적 경험이 큰 힘이 되었으며, 한국에 와서 한

국어 실력이 80프로 늘어 스스로 뿌듯한 마음으로 대학진학에 성공하는 등 자신감을 회복하는 경험도 밝혔다.

과학을 좋아하고 진로 관련해서 참여했고, 진로 관련 대학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과학에 대해서 준비해서 상을 받았어요. 최우수상을 받았을 때 그때 뿌듯했어요. (참여자 2)

한국어를 몰라 힘들었지만 지금은 80% 늘었어요. 대학교도 수시로 준비했고 붙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참여자 4)

(3)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생활 경험에 관한 심층면접 내용을 분석한 주요결과는 <표 IV-14>와 같다.

<표 IV-14>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생활 경험에 대한 개념과 범주에 따른 분석

범주	하위범주	개념
지역사회 생활경험	지역사회의 지원	난민입국 후 의정부에서 첫 정착을 시작함
		어머니와 아버지는 일주일에 8시간씩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사회통합 한국어, 문화 학습 지원받고 있음.
		신한대학교 다문화 대안학교에서 한국어 지원
	이웃과의 관계	한국생활이 좋지만 코로나로 바깥에 나가는 일은 매우 적음 주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잘해줌
		지역사회에서 이웃이나 다른 가족들과 교류 없이 단절된 생활 중
		한국어가 안되니까 동네에는 잘 안 다니고 이웃들하고 교류 없음
		의정부 지역에 이웃들이 생활 물건을 갖다 준다거나 신경을 써주어 좋았던 기억이 있음
	지역사회 만족도	지역에 이슬람교라는 종교적 장소가 없어 제한이 많음
		의정부에서 사는 것에 만족해서 계속 살고 싶음
		대중교통이 편하고 와이파이, 인터넷 등 생활이 편리해서 좋음
		한국 생활이 외로울 때 고향이 생각나면 가고 싶기도 하지만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음
		한국은 날씨가 좋고, 음식이 좋음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가정, 학교, 그 이외에 많은 시간을 활동하는 공간이 지역사회이다. 지역사회에는 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문화 기관, 청소년 복지기관, 방과후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교회 등이 밀집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역사회 자원과 가정, 그리고 청소년이 밀접한 관계를 맺느냐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국가 및 개인 정체성 형성과 사회의 애착에 영향을 미친다.

또래의 청소년들과 어울리고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것도 지역사회이며, 지역사회내의 종교시설과 이웃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는 때로는 공공기관인 정책적 서비스보다 더 가까워서 이들의 취약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자원이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이 본인이 삶을 영위하는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기관, 청소년센터, 돌봄기관,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 경험을 확인해 보았으며, 학교생활에서의 교육, 또래 친구, 선생님에 관한 경험을 확인해 보았으며, 이러한 경험을 하위 범주화하면 '지역사회의 지원', '이웃과의 관계', '지역사회 만족도'로 도출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생활경험에 관한 경험에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지역사회의 지원」이라는 하위범주에 대하여 난민입국 후 의정부에서 첫 정착을 시작하였으며, 어머니와 아버지는 일주일에 8시간씩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사회통합 한국어, 문화 학습 지원받고 있다고 말하였다.

공항에서 나가자마자 의정부로 왔고 의정부에서 한 일주일 있다가 인천 외국인 지원센터에서 6개월 동안 지냈어요. 그리고 의정부에 다시 살았어요. 의정부에 처음 집에서 살았던 곳이에요. (참여자 2)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사회통합 프로그램 듣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는데 일주일에 8시간 한국어를 배우고 다문화센터에서 전화 왔어요. 집에 와서 한국어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해요. (참여자 4)

둘째, 「이웃과의 관계」라는 하위범주를 살펴보면, 한국생활이 좋지만 코로나로 바깥에 나가는 일은 매우 적고, 주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잘해주지만 이웃과는 교류 없이 단절해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잘 안 나가요 코로나도 그렇고, 친구가 한명 있기는 한데, 나가서 잘 돌아다니지 않아서 몰라요. 이웃들 중에 필요 없는 물건을 갖다 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좋았어요. 외로울 때도 있어요. 고향 생각나면 가고 싶어요. (참여자 2)

셋째, 「지역사회 만족도」라는 하위범주를 살펴보면, 의정부에서 사는 것에 만족해서 계속 살고 싶다는 마음과 대중교통이 편하고 와이파이, 인터넷 등 생활이 편리해서 좋으며, 다만 지역에 이슬람교라는 종교적 장소가 없어 종교적 제한을 느낀다고 밝혔다.

여기는 안전하고 그리고 대중교통이 편해요. 교통이 아무데나 갈 수 있고 그리고 대중교통에 와이파이 있어요. (참여자 3)

종교가 이슬람교기 때문에 모스크가 별로 없어서 다니기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서울에는, 옛날에 서울 많이 갔었고 그런데 의정부에도 있지만 많이 없어서 종교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참여자 4)

(4)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공공기관 생활 정책지원 한계와 욕구에 대한 개념과 범주에 따른 분석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의 공공기관 생활 정책지원 한계와 욕구법적 생활 한계 경험에 관한 심층면접 내용을 분석한 주요결과는 <표 IV-15>와 같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은 가족 내에서 돌봄을 받으며 성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 내 성장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가정에 지원되는 공적기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불가결하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은 경제적 취약성과 가족의 안정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취약한 가정에 대한 지원들이 필요함에도 자녀들 대부분이 귀화를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신분을 얻기 이전에는 한국출생 다문화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정책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학교 내에서의 급식, 활동비, 대학추천 등에 배제되거나 학교 외에서는 뒤 떨어지는 학업에 대한 과외활동이 필요함에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이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거나 받기를 희망하는 요구내용들을 확인해 보았으며, 이러한 경험을 하위 범주화하면 ‘정책지원 제외 학습권, 건강권, 복지권’, ‘공공 정책 및 복지 서비스로 받았던 지원’, ‘정책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도출할 수 있다.

〈표 IV-15〉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공공기관 생활 정책지원 한계와 욕구에 대한 개념과 범주에 따른 분석

범주	하위범주	개 념
공공기관 생활 정책지원 한계와 욕구	정책 지원 제외 학습권 건강권 복지권	집에만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주민등록이 없어서 겪는 어려움은 없었음
		난민으로 중도입국하여 가장 힘들었던 것은 복잡한 심사 절차
		난민으로 인정되고 F2 비자를 받기 까지 4년이나 오래 걸려 경제적 생활, 공부, 의료 등 다 어려움
		가족들도 많고 난민이기에 거주지를 찾을 때 거절당함
		난민가족으로 주거의 안정성이 없어 이사갈 때 마다 고생
		대학을 가고 싶어도 비싼 대학 등록금이 벌써 걱정
		한국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으나 선정되지 못함
		귀화 없이는 여전히 대학교 지원은 어려운 상황
		막내 동생은 유치원 가는 것을 지원받지만 난민 등록 이전에 넷째 동생은 돈을 내고 유치원 다님
		난민으로 인정되기 전에 건강보험이나 사회보험, 비자발급 등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음
		비자가 G1이라 한국에서 할 수 있는게 많이 없고 지원받는 것도 적음
		의료비와 보험도 지원받지 못해서 아프면 필요함
	공공 정책 및 복지 서비스로 받았던 지원	막내 동생이 아팠지만 지원이 없기에 계속 조르고 이야기해서 동사무소에서 힘들게 지원받음
		주민센터에서 쌀, 생필품, 마스크를 지원받았던 기억
		경기도 G 드림 카드로 동생들은 편의점에서 8천원씩 식사를 살 수 있는 지원카드를 사용 가능
		중도입국 한 후 귀화해서 대학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
	정책지원을 원하는 것	중도입국 유·아동·청소년도 교육비나 급식비가 무료지원 되기를 원함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의 발달권 보장을 위해 가정 내 경제적 지원 필요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학생들의 학용품 지원도 필요함
		대학교 입학할 때 장학금 제도가 있으면 하는 바람
		귀화하게 되면 다문화 학생이 아닌 한국인으로서 정시 및 수시로 학교를 가야되는 상황으로 특별전형 제도 지원

다음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의 공공기관 생활 정책지원 한계와 욕구법적 생활 한계 경험에 관한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정책 지원 제외 학습권, 건강권, 주거권」이라는 하위범주에 대하여 집에만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주민등록이 없어서 겪는 어려움은 없었으나, 난민으로 중도입국하여 가장 힘들었던 것은 복잡한 심사 절차와 난민으로 인정되고 F2 비자를 받기 까지 4년이나 오래 걸려 경제적 생활, 공부, 의료 등 모두 어려웠다고 밝혔다.

귀화하지도 못했고 주민등록증도 없어서 집밖에 잘 나가지 않아요. 그냥 학교에서 공부 하거나 한국어를 배우러 갈 때 지하철을 타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은 잘 모르겠어요. (참여자 1)

많았죠. 난민으로 인정되기 전에 지원을, 건강보험이나 사회보험을 받지 못했고. 항상 신청할 때 비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일단 심사가 너무 복잡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4년 동안 계속 심사 기간 연장 통시서가 와요. 지금도 기초생활 수급사 신청했는데 아직 통지 안 왔어요. (참여자 2)

둘째, 「공공 정책 및 복지 서비스」로 받았던 지원이라는 하위범주를 살펴보면, 막내 동생이 아팠지만 지원이 없기에 계속 조르고 이야기해서 동사무소에서 힘들게 지원받았던 적이 있으며, 경기도 G 드림 카드로 동생들은 편의점에서 8천원씩 식사를 살 수 있는 지원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동생이, 막내 동생이 많이 아팠을 때 주민센터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지원을 못 받았었어요. 그런데 긴급 지원을 해줬어요. 동생이 입원을 해서, 어렵게 긴급지원 받았어요. 계속 이야기하고 조르고 그때서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참여자 2)

G드림 카드를 받아서 식당이나 편의점에 가서 매일 8천원씩 살 수 있어요. (참여자 4)

셋째, 「정책지원을 원하는 것」의 하위범주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학생들의 발달권 보장을 위해 중도입국 유·아동·청소년도 교육비나 급식비가 무료지원이 필요하며 귀화하게 되면 다문화 학생이 아닌 한국인으로서 정시 및 수시로 학교를 가야되는 상황으로 귀화 없이도 특별전형 제도 지원을 원했다.

저 막내 동생이 올해 유치원 들어가요. 넷째 동생이 유치원 다녔을 때 외국인이라서 수업료를 내야 했어요. 우유 값도 내야 했어요. 수업료하고 우유. 아무 지원이 없었어요. (참여자 2)

귀회시험을 안 보면 대학을 갈 수 없어요. 시험을 봐서 한국사람이라 대학 들어가는데 다문화 전형을 못한테요. 그래서 한국 아이들이랑 똑같이 시험보고 수시를 준비했어요. 대학 등록비가 걱정인데, 장학금이나, 교통비가 지원되면 좋겠어요. (참여자3)

3) 기관 종사자에 대한 분석결과

(1) 기관 종사자들의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가족경험에 대한 개념과 범주에 따른 분석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의 교육 및 상담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 내용을 분석한 주요결과는 <표 IV-16>과 같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 대부분은 성장기 중간에 입국하여 가족의 돌봄, 양육, 훈육 및 교육을 필요로 하는 미성년자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초기 입국하여 새로운 가족원 또는 가족문화에 얼마나 초기 적응이 되느냐에 따라 그 들의 한국사회에서의 장기 정착이 판가름 된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에서 느끼는 소외나 가정생활의 경제적 어려움, 다문화라는 낙인과 재혼, 이혼, 입양, 한부모 등의 다양한 가정 형태는 가족의 정체성 혼란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다. 게다가 결혼이민자는 한국의 양육, 훈육 문화에 익숙하지 못해 비록 자녀와 언어적 소통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교육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앞서, 기관 종사자들이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을 지도하면서 그들의 가족과 관련한 어려움에 대한 경험적 이야기를 범주화하면 가족생활에서의 정체성과 교육의 혼란을 경험하고 그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정책적 요소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하위 범주화 하면 ‘가족 없이 혼자 지냄’, ‘열악한 가정환경과 경제적 어려움’, ‘다양한 가정형태로 가족 정체성 혼란’, ‘가족 내 여성결혼 이민자의 자녀교육에 대한 한계’로 나타났다.

〈표 IV-16〉 기관 종사자들의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가족경험에 대한 개념과 범주에 따른 분석

범주	하위범주	개념
가족생활에서의 정체성과 교육의 혼란	가족 없이 혼자 지냄	주로 혼자 지내고 있음
		재혼한 부모는 식당일을 다니고 있으며, 학생은 혼자 사준기를 겪고 있음
		보호자의 부재가 만연함
	열악한 가정환경과 경제적 어려움	대부분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주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갖고 있음
		매우 어려운 환경이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엄마의 한국어 부족으로 일을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 부모로서 경제생활을 해야 하므로 경제생활 어려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아주 열악한 가정환경임
	다양한 가정형태로 가족 정체성 혼란	부모의 재혼으로 가정생활의 혼돈을 경험하고 있음
		다양한 유형의 가정형태를 갖고 있으며, 매우 열악한 가정환경임
		재혼가정으로 가정생활의 정체성의 혼돈을 경험하고 있음
	가족 내 여성결혼 이민자의 자녀교육에 대한 한계	부모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아이를 가르치는 것에 한계가 있음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지만 어머니가 가르치기는 어려움
		부유하지는 않지만 자녀교육의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음

(2) 기관 종사자들의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학교경험에 관한 개념과 범주에 따른 분석결과

연구 참여자들이 밝히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의 과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이들에게 학교란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그들의 과업은 학업성취와 또래 간의 적응이다. 이들은 공교육에서 대안학교로 옮기는 과정 중 또래들로 부터 소외와 따돌림을 경험하거나 언어의 미숙 또는 학업문화의 차이로 어려움을 경험한 상태였다고 하였다.

특히 대안학교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이 동변상련의 상황에 놓여있는 대안학교로의 전입 이후 점차 적응을 보이고, 학교에 적응하려는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게다가 미숙함에도 진도를 따라가려고 노력하거나, 그 와중에 흥미로운 과

목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였다. 이들에게 있어 학교는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과 관계로 이루어진 곳으로 대한민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장기 정착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배움터가 되며, 이들에게는 학교규칙, 또래간의 갈등, 미숙한 언어, 학업문화의 차이, 문화적응의 난제 등의 경험이 이어졌다.

이러한 그들의 학교에서의 경험은 ‘동변상련의 또래들이 있는 대안학교에서 적응이 좋음’, ‘학교 규칙을 따르고 적응하기 위한 노력’, ‘또래 간 이중 언어의 장점’, ‘학교에서 또래들 간의 소외와 따돌림’, ‘한국어 미숙으로 학습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려움’, ‘한국어는 미숙하지만 친구가 좋고 흥미로운 과목 있음’, ‘학습과 문화적응의 난제’, ‘학교에 적응하고자 하는 긍정적 태도’로 나타났다.

〈표 IV-17〉 기관 종사자들의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학교경험에 관한 개념과 범주에 따른 분석

범주	하위범주	개념
학교생활에서 또래적응과 학업성취 의 과업	동변상련의 또래들이 있는 대안학교에서 적응이 좋음	위탁형 대안학교에서 동아리 및 자격증 교육을 하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즐겁게 생활함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비슷한 환경 속에 지내는 친구들과 서로 의지하며 성격도 많이 밝아지고 자신감도 많이 생겨 긍정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음
		대안학교에서의 학습태도는 매우 우수한 모습임
		다양한 경험으로 학습이 어렵지만 서로 부족한 부분은 도와주며 즐겁게 생활함
		학교 다니는 것은 매우 싫어하였으며, 대안학교를 오면서 조금씩 밝아짐
		본교 있을 때보다 대안학교에서 더 활기차 보임
		같은 중도입국 한 친구들과의 관계만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음
		공교육에서보다 대안학교에서 더 즐거워하는 것 같음
		대안학교에서는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과 생활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음
	학교 규칙을 따르고 적응하기 위한 노력	교사의 지시에 따르려고 노력함
		등교시간, 쉬는 시간 등의 교칙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려고 노력함
		교사의 지시 외에도 교칙을 잘 이해하고 지키려고 함

범주	하위범주	개념
학교생활에서 또래적응과 학업성취 의 과업	또래 간 이중 언어의 장점	필리핀 학생으로 영어사용하면 의사소통 문제없음
		다른 친구들은 오히려 영어를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함
	학교에서 또래들 간의 소외와 따돌림	한국학생들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
		약간의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학교생활은 지속함
		한국말이 서툴러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외톨이로 지내고 있음
		교우관계가 매우 어려움
	한국어 미숙으로 학습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려움	수업시간에 학습 언어를 알아듣지 못해서 어려워하고 있음
		학교에서는 꼭 찬 수업일정이어서 이해를 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많음
		한국어가 서툴러 학업진도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국어가 안 되니 학습에 대한 열의가 없음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학습의 흥미를 잃음
		한국어습득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임
	한국어는 미숙하지만 친구가 좋고 흥미로운 과목 있음	같은 국적을 가진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만 어려운 교과 내용이 나오면 힘들하고 있음
		한국어가 부족해서 공교육의 교과를 따라가기 어려우나 흥미가 생기는 과목은 열심히 하려고 함
		모국어(영어)를 사용해주면 즐거워하고 좋아하지만, 한국어로 하는 수업은 매우 어려워 함
		학습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한국의 학습 진도가 늦어짐에 따라 힘들어하며 자신감을 많이 잃음
		배우려고 하는 의지도 강하고 수학적 머리가 있음
	학습과 문화적응의 난제	어휘이해 부족이 가장 큼
		학습의욕이 없고 학습결손이 너무 많은 상태임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인 차이 극복의 어려움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새로운 가족과의 적응에 어려움
	학교에 적응하고자 하는 긍정적 태도	항상 웃는 모습으로 교우관계와 적극적인 학습태도를 보임
		비교적 학교적응이 빠름

(3) 기관 종사자들의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지도경험에 관한 개념과 범주에 따른 분석결과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가장 어렵게 호소한 것은 한국어의 미숙이었다. 청소년기 중기에 입국한 학생들 대부분은 한국어 미숙으로 학업에 흥미를 잃거나, 흥미 있는 과목이 있다 하더라도 자국의 언어가 아닐 경우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정량적 부분으로 진도를 나가야 하는 교육의 특성상 아이들과의 수업에 대안을 마련하는데 휴대폰 번역기를 사용하거나, 그림, 음악, 단순화된 영상 등의 매체를 활용하고 있었다. 언어소통 문제는 단순히 한국어라는 어휘를 넘어 언어란 대한민국의 전통적 문화적 요소와 가치가 담긴 내포된 뜻이 있기에 그것을 이해시키는 것에도 한계를 느껴야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난제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갖는 개별화된 관심을 확장시키고, 수업모습을 촬영해 학생이 재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가 하면 한국문화 경험을 통해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경험의 장을 제공하면서 지도의 어려움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고 실천했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은 ‘언어의 한계로 지도하는 선생님의 고충’, ‘문화의 차이로 가르치기 어려운 학습지도’, ‘교육문화수준 차이로 겪는 어려움’, ‘학습을 지도하기 위한 매체활용’, ‘적응을 돕기 위한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하위범주화해서 나타났다.

〈표 IV-18〉 기관 종사자들의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지도 경험에 관한 개념과 범주에 따른 분석

범주	하위범주	개념
지도하는 선생님의 현장에서 어려움과 대처방법	언어의 한계로 지도하는 선생님의 고충	쉽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 진도 나가는데 어려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학생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어려움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것 같아 힘듦
		학부모들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중·고등 교재를 재해석하여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어려움
	문화의 차이로 가르치기 어려운 학습지도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연령대와 국가의 다양성을 이해하면서 학습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어려움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배려하면서 수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과 한국어 구사능력이 없어서 힘듦
		언어소통의 문제와 한국문화를 모르므로 하니하니 가르치면서 해야 하므로 학습 지도에 어려움이 있음

범주	하위범주	개념
지도하는 선생님의 현장에서 어려움과 대처방법	교육문화수준 차이로 겪는 어려움	본국에서 공부했던 수준과 현재 한국 학습 수준에 현저한 차이로 인해 기초를 어떻게 가르쳐 하는지 막막함
	학습을 지도하기 위한 매체 활용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영상 및 사진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고 있음
		그림 혹은 카드, 영상을 활용함
		가장 쉬운 단어와 단순한 문장, 혹은 휴대폰 번역기를 사용해 대화함
		학습언어를 최대한 천천히 말하여 학생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노력함
	적응을 돕기 위한 선생님들의 노력	기본적인 어휘 설명과 메뉴얼화 된 수업 자료 활용
		소수의 개별학습과 학습의욕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
		학생들과 유대감을 갖도록 노력해야 함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하기 위한 정서적 노력 필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거나, 수업과정 동영상을 찍어 다시 집에 가서 복습하도록 도움
		이중 언어 및 문화수용의 강점을 이용하여 자신감을 향상시키려고 함
		자신의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면서 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함
		한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학습지도 함
		다문화 대학생 멘토를 연계하여 학습과 한국문화를 느끼고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줌
		월드비전 꿈 디자이너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함

(4)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기관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제안하는 요구에 관한 개념과 범주에 따른 분석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지도하는 환경의 공간과 학생 당사자에게 지원 되어질 필요가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야기하였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들의 정서, 교육,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크게 요구되어 졌다. 첫째 정서 프로그램으로 심리적 안정, 학생들의 의사소통방법, 적응에 필요한 사회성 향상 방법 등의 필요를 요구하였다. 둘째, 교육에 있어서 언어, 문화의 적응과 향상을 위해 1대1 멘토링의 연계나 인권, 기능적 취업 진로교육을 요구하였다. 셋째, 관계증진 프로그램으로 또래 간 집

단 프로그램, 토래문화 이해하기 등의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들이 직접 배우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도 기자재의 개선이 필요하고 공간의 확장, 접근성 강화 매체 지원 등의 요구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의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학생 당사자에게 필요한 지원 요구는 ‘정서, 교육, 관계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배움 현장공간변화에 관한 요구’로 하위범주 분류로 나타났다.

〈표 IV-19〉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기관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제안하는 요구에 관한 개념과 범주에 따른 분석

범주	하위범주	개 념
다문화, 아동 청소년 학생들에게 필요 되는 지원책	정서, 교육, 관계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들의 정서, 교육,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개발 시급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과 취업을 위한 진로교육 필요
		언어가 안 되지만 아이들의 강점 찾아 능력 개발하는 프로그램
		학생들의 소통방법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회망의 촘촘한 설계가 필요
		적응을 위한 다양한 방법 시도 필요 (현시인 대화나 실생활 및 문화 활동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학생과 한국학생 적응 위한 토래 집단 멘토링 동아리 결성하여 프로그램 지원
		토래 청소년들의 정서이해 및 인권존중을 배울 기회 필요
		학생들에게 다른 문화를 익힐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실시
		토래 집단 형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배움 현장공간 변 화에 관한 요구	수업도구 지원
		학생들에게 학습도구 지원 및 교사들의 복지시스템 구축 필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를 위한 돌봄 공간 필요
		심리지원을 위한 멘토링이나 동네이웃 찾기 등 작은 단위의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기관 및 공간 지원책 마련
		수업공간의 협소함
		거점이 너무 멀어 집에서 방문교사를 부를 수 밖에 없기에 접근성 좋은 한글 배우는 소규모 사업 공간 필요
		언어가 미숙해 매체를 활용하는 수업이 자주 해야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자재 확충해 주기 바람

(5)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기관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제안하는 지역사회 역할에 관한
개념과 범주에 따른 분석결과

연구 참여자들이 교사의 입장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학생들에게는 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학생이 공교육에 진입하기 전 보충교과 개설과 공교육 진입 전 프로그램 지원, 법무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부처 간의 협력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의 돌봄 프로그램의 개설 및 확대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의 제언은 ‘공교육 및 지역사회 연계 시스템 구축의 필요’로 하위범주분류로 나타났다.

〈표 IV-20〉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기관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제안하는 지역사회 역할에
관한 개념과 범주에 따른 분석

범주	하위범주	개념
정부 및 지역사 회의 역할	공교육 및 지역사회 연계 시스템 구축의 필요	초기 학교생활 위해 기본내용 보충할 수 있는 교과 개설필요
		예비학교 및 대안학교를 통해 공교육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지원 필요
		지역사회와 관공서들의 공조 필요
		초기학교 생활 적응 위해 대안학교 연계 및 기본기 보충위한 교과 개설 필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 사례관리 필요
		재능 발견하여 지역사회와 연결 노력 필요
		학교적응과 지역문화적응 위한 공교육 지원 필요
		학교적응생활 지원 프로그램의 체계화
		법무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부처 간의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지원 필요
		체계적인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필요

V 연구결과

본 연구는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들의 법적지위와 다양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 그들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중도입국 자녀로서의 삶의 경험과 법적지위 향상과 관련된 요구를 청취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아동과 청소년들의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의정부시 차원의 제도적, 서비스적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방법은 정성조사로 경기도교육청 지원 다문화센터, 의정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거나 의정부 관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부모 및 자녀를 대상으로 심층면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대상자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5명, 다문화 아동·청소년 5명, 교육실무자 6명이다. 본 연구의 심층면담의 설문문항의 구성은 연구 참여자들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교육지원과 공공 서비스 이용 및 생활하는데 있어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서비스 욕구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가정양육 경험에 대한 개념과 범주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문화 가정 부모들은 다문화 아동·청소년 자녀에 양육을 하면서 자녀와의 상호작용,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가족의 협력, 가족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었으며, 이를 범주화하면 ‘경제적 빈곤은 자녀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 ‘일과 자녀 양육의 한계’, ‘가정 내 교육은 포기’, ‘가족 공동체 내 따로 또 같이’로 도출할 수 있다.

두 번째, 다문화 아동·청소년·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학교 교육에 관한 경험에 따른 분석결과는 우리아이 학교적응에 가장 필요한 ‘한국어’, ‘아이에게 중요한 건 학교지원’, ‘공공학교 선생님과 소통부족’, ‘다문화 대안학교 선생님’, ‘자녀에 대한 학업 기대감’, ‘외국인 어머니의 학교참여 소외’, ‘공교육 학교 적응 위한 또래관계는 필수’로 도출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다문화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지역사회 생활 경험에 대한 개념과 범주에 따른 분석결과는 의정부시가 지속적으로 살아갈 제2의 고향인 ‘지역사회’로서의 적절한 마을 공동체 시스템이 갖추고 공공기관, 복지기관, 이웃 그리고 가정이 관심과 복지 그물

망으로서 역할을 하여, 지역 환경 속에 이방인이 아닌 가족으로 적응되어 가는 요소로 기능하는지 확인해 보았다. 이러한 경험을 하위 범주화하면 ‘지역 사회복지 기관의 도움’, ‘이웃 없는 지역사회’, ‘거주를 지속하고 싶은 지역사회’, ‘자녀의 국가 정체성’으로 도출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다문화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공공서비스 지원 한계와 욕구에 대한 분석결과는 ‘공공기관지원 배제 경험’, ‘건강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자녀 프로그램 지원 욕구’로 도출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다문화 아동청소년자녀를 둔 부모의 행정 및 정책변화에 대한 의견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문화 가정의 부모를 둔 아동 청소년의 지원 정책과 무관할 수 없으므로 이들의 정책적 요구는 ‘자녀 생활에 대한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행정 및 정책에 대한 의견’으로 도출되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첫째,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가정생활 경험에 대하여 가족 내 상호작용에 관한 자녀의 입장에서의 경험을 확인해 보았으며, 이러한 경험을 하위 범주화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 ‘가족이 직면한 어려움’, ‘가족 내 부모와의 상호작용’으로 도출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경험에 대한 개념과 범주에 따른 분석결과이다. 학교생활에서의 교육, 또래 친구, 선생님에 관한 경험을 확인해 보았으며, 이러한 경험을 하위 범주화하면 ‘학습의 가장 큰 어려움의 시작 ‘한국어’, ‘학교수업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 ‘학교와 병행한 다문화 대안학교’, ‘수업적응의 중요한 열쇠 ‘선생님’, ‘학생을 침묵하게 만드는 선생님’, ‘미래에 대한 희망 ‘꿈’, ‘적응을 돕는 차별 없는 친구들’, ‘교류없는 학교생활로 단절된 친구관계’로 도출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생활 경험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학교생활에서의 교육, 또래친구, 선생님에 관한 경험을 확인해 보았으며, 이러한 경험을 하위 범주화하면 ‘지역사회의 지원’, ‘이웃과의 관계’, ‘지역사회 만족도’로 도출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공공기관 생활정책지원 한계와 욕구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이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거나 받기를 희망하는 요구내용들을 확인해 보았으며, 이러한 경험을 하위 범주화하면 ‘정책 지원 제외 학습

권, 건강권, 복지권, ‘공공 정책 및 복지 서비스로 받았던 지원’, ‘정책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도출할 수 있다.

다음은 기관 종사자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첫째, 기관 종사자들의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가족경험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가족 없이 혼자 지냄, ‘열악한 가정환경과 경제적 어려움’, ‘다양한 가정형태로 가족 정체성 혼란’, ‘가족 내 여성결혼 이민자의 자녀교육에 대한 한계’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기관 종사자들의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학교경험에 관한 개념에 따른 분석결과이다. ‘동변상련의 또래들이 있는 대안학교에서 적응이 좋음’, ‘학교 규칙을 따르고 적응하기 위한 노력’, ‘또래 간 이중 언어의 장점’, ‘학교에서 또래들 간의 소외와 따돌림’, ‘한국어 미숙으로 학습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려움’, ‘한국어는 미숙하지만 친구가 좋고 흥미로운 과목 있음’, ‘학습과 문화적응의 난제’, ‘학교에 적응하고자 하는 긍정적 태도’로 나타났다.

세 번째는 기관종사자들의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청소년 지도경험에 관한 개념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언어의 한계로 지도하는 선생님의 고충’, ‘문화의 차이로 가르치기 어려운 학습지도’, ‘교육문화수준 차이로 겪는 어려움’, ‘학습을 지도하기 위한 매체활용’, ‘적응을 돕기 위한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하위범주화 해서 나타났다.

네 번째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기관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제안하는 요구에 관한 개념에 대한 분석이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학생 당사자에게 필요한 지원 요구는 ‘정서, 교육, 관계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배움 현장 공간 변화에 관한 요구’로 하위범주 분류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기관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제안하는 지역사회역할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제언은 ‘공교육 및 지역사회 연계 시스템 구축의 필요’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의 경제적 위기 보전에 필요한 지원의 절실함이다. 다문화가정 내 중도입국 청소년 정책은 대상이 아동 청소년인 동시에 목표는 복지이다. 각 연구 참여자 그룹에서는

특히 빈곤으로 제약받는 어려움을 밝혔으며 이는 자녀의 보육, 양육, 교육, 가족 건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동청소년 복지 구현을 위한 정책수행에는 아동이 속한 가족을 포함하는 서비스가 대부분 포함되어 가정의 경제력과 자녀의 삶의 질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중도입국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가족 빈곤의 예방 및 개입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의 **교육권리 보장과 국가의 보호책임의 필요**이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발달권리의 주체로서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교육받을 권리와 이를 제공할 국가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부모, 당사자인 중도입국 청소년, 교육기관의 관계자들은 이들의 교육에 있어 한국어가 우선 기초적으로 근간이 되어야 하고 그 과정은 매우 길고 어렵다고 말한다. 특히,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의 공교육인 학교와 대안학교 기관 간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인하여 각 교육 기관 간 분절된 학생관리 및 행정을 한 곳에서 단일화하여 학생 수준에 맞는 개별화된 단계별 한국어 교육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의료시스템 지원**이다. 이들이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와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를 외국인의 신분으로 귀화 이전의 상태에서도 우선 지원되어야 할 특별예외 지원 정책 보장을 원하고 있다.

넷째, 발달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및 기관으로부터 복지서비스 및 여가서비스의 지원의 부재**이다. 한국어 이외에는 교육관련 서비스가 부재한 상황에서 더구나 문화 및 여가서비스는 모든 연구 참여자는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들이 귀화 이전의 상황이라도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하여 배제 없이 확대하여 우선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섯째, **다문화 가정 내 부모-자녀의 원활한 상호작용과 유대관계 강화의 필요**이다. 자녀들은 가족 간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에게 배우며 가족 내 역할수행을 통해 사회적 역할 또한 배운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내 중도입국 자녀는 부모의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역할 역전이, 입양에 따른 계부와의 소통단절, 개별 가족의 적응으로 가족 간 스트레스 증가로 가족 간 상호작용은 미흡하다. 가족 내 단절과 과도한 자녀의 역전이 된 부모역할로 갈등이 확대되기 전 안정적이고 조화롭게 기능할 수 있도록 자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지역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의 장점과 재능을 확장시킬 수 있는 **의정부시의 포용적 다문화 지원 제도 요구**이다. 의정부시의 특화된 다문화 정책 수립으로 자녀들의 다국어 재능을 확장시켜 미래 인재로 성장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들의 교육 및 복지권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위가 향상되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VI 정책 및 제언

현재 다문화가정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주요법률은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재외동포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들도 별도로 입법되어 있고 추진부서도 서로 달라 상호연관성이 없다고 본다. 즉, 국적정책, 복지정책, 인권정책, 교육 정책 등에 필요한 법률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문화가정 아동과 청소년들은 혈통중시 유교문화를 중시하는 우리사회에서는 주변인적인 법적 지위에 머물 수밖에 없으며 법적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인권침해 현상이 발생해도 감내할 수 밖에 없다. 2011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개최한 제2회 인권환경대회에 참석한 마크엘리스는 “아시아의 경우 법치주의를 정의하면서 인류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를 간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 하였다. 특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비차별에 대한 권리, 불균등하게 처벌받지 않을 권리 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을 포함한 다문화가정 아동과 청소년들의 보편적 권리와 법적지위를 부여할 것을 우회적으로 역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다문화아동과 청소년의 법적지위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사 분석을 하였다. 조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아동과 청소년의 법적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의정부시의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제1과제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기반 마련**이다.

첫째,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지원관련 조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의정부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족들은 경제적 문제와 함께 자녀양육 및 교육의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가족의 자녀 즉, 다문화가정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례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현재 안산시에서 제정 시행),

“ 다문화 특수아동·청소년(장애, 영재)지원에 관한 조례”

둘째,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기초자료의 확보라고 볼 수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기초자료의 부재는 다문화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 시행대상 범위가 불명확하여 정책부재의 문제원인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다문화가정 아동과 청소년들의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책추진체계의 기반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의 통계조사와 정책자료의 접근성 확보, 이러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담당부서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제2과제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의 법적지위의 강화**이다.

첫째, 다문화가정 아동과 청소년의 법적지위는 다문화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인식 개념이며 지위향상을 위하여 기본적 발달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아동청소년 지원제도와 연계하는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빈곤가족, 한부모 가족, 장애가족, 조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다문화아동과 청소년 들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대상을 발굴, 관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의정부시는 기초단전국에서 유일무이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중도입국)의 법적지위 향상에 관한 연구를 토대를 바탕으로 하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가족단위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제3과제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니즈 충족정책 발굴 및 개발**이다.

첫째, 중도입국아동과 청소년을 포용하기 위한 정책검토가 필요하다. 중도입국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출신국의 문화와 익숙치 않은 문화사이에서 적응의 문제를 보다 많이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과 지역사회활동에 어려움을 크게 느낀다.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많지 않을 경우 결국 부적응의 문제는 학교폭력, 학업중단, 가출등의

문제로 확산될 수 도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과 청소년들도 우리사회 미래의 주인공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를 위한 지역사회차원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다문화가정아동과 청소년의 발달단계별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아동은 일반적으로 영유아기(0-6세), 학령전기(7- 10), 학령후기(11-13), 청소년전기(14-16), 청소년후기(17- 19)로 구분할 수 있다. 각 발달단계별 발달특성도 상이하고 다문화가정 아동과 청소년의 배경과 환경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반영한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포용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다문화청소년은 진로와 직업교육 및 아르바이트 등 직업 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진로와 직업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지역사회에서 직업을 가지게 됨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연대감과 소속감을 지닐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 기업체나 공공기관이 연계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에게 인턴십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찾아가는 홍보와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청소년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잘 모르고 무엇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을 방문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조사결과 여가시간의 부족 등 다문화가정아동과 청소년들의 활동범위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률 과 정보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다문화가정 아동과 청소년을 찾아가는 홍보와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과제	과제명	세부내용
제1과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정책 추진체계 마련	-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지원관련 조례제정 - 다문화가정 아동과 청소년 실태조사
제2과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법적지위강화	- 기본적 발달권보장차원의 지원 - 소외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제3과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니즈충족 정책 발굴 및 개발	- 중도입국청소년 포용정책 검토 - 다문화아동 발달단계별 정책마련 -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포용적 네트워크 구축 - 찾아가는 홍보와 지원제도

다섯번째, 의정부시는 기초단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중도입국)의 법적지위 향상에 관한 연구를 토대를 바탕으로 하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다문화가정의 빈곤의 예방 개입을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중도입국)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의 공교육인 학교와 대안학교(신한파로또같이 학교)기관 간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인하여 각 교육기관 간 분절된 학생관리 및 행정을 한 곳에서 단일화하여 학생 수준에 맞는 개별화된 한국어 교육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의정부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외국인의 신분으로 귀화 이전의 상태에 서서도 특별 예외 지원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의정부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특별예외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열덟번째, 의정부시의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중도입국)자녀들이 복지시설 및 기관으로부터 복지서비스 및 여가서비스의 지원으로부터 부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귀화 이전의 상황이라도 아동청소년(중도입국)들이 배제 없이 확대하여 우선할 필요가 있다.

아홉번째, 제2의 가족으로 형성된 다문화가족(중도입국)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 내 부모-자녀의 원활한 상호작용과 유대관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가족 내 단절과 과도한 자녀의 역전이 된 부모역할로 확대되기 전 안정적이고 조화롭게 건강한 가족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는 수요조사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의정부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중도입국)들이 지역사회의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그들의 장점과 재능을 확장할 수 있는 의정부시의 포용적 다문화 지원 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의정부시의 특화된 다문화 정책 수립으로 자녀들의 다국어 재능을 확장시켜 미래 인재로 성장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들의 교육 및 복지권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위가 향상되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의 발 빠른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Ⅰ 국내문헌

- 교육부. 2012.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
- 구인회. 2003.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 가족구조와 가족소득,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2: 5-32.
- 금명자·이영선·김수리·손재환·이현숙. 2006. 「다문화가정 청소년(혼혈청소년) 연구 -사회적응 실태조사 및 고정관념 조사」.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수희·전성희. “다문화가정 자녀의 다문화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 『아동가족치료연구』 10: 53-67.
- 김순규. 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청소년학 연구』 18(3): 247-272
- 김이선·정해숙·주유선. 2012. 「다문화, 아동청소년 초기지원사업(Rainbow School) 발전 방향 연구」. 다문화, 아동청소년지원재단.
- 류방란·오성배·박균열·송인영·박지은. 2011. 「외국출생 동반입국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류방란·오성배. 2012.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교육기회와 적응실태”. 『다문화교육연구』 5(1): 29-50.
- 류방란·김경애·이재분·송혜정·강일국·유지명. 2012. 「중등교육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실태 및 지원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문은식·김충희. 2003. “부모의 학습지원 행동과 초·중학생의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7(2): 271-288.
- 박순희·조원탁·이주희. 2008.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회적응과 관련 변인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7: 53-76.
- 법무부. 2012. 내부자료.
- 법무부. 201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2018~2022).
- 손영화, 박봉수, 2015. “일반논문 : 학교 밖 중도입국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사례 연구” 『교육문화연구』 21(1),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 신난희. 2019. “이주배경 청소년의 생활세계와 사회참여활동에 관한 사례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Vol.0 No.31,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 신현옥·윤상석·이슬기·김도혜·이향규·오수연. 2012.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유형별 실태와 정책과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 심우엽. 2009. “다문화 학생의 민족정체성 및 정서적 특성”. 『초등교육연구』 22(4): 27-47.

- 양계민. 2011. “다문화,아동청소년의 실태 및 현황”.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다문화,아동청소년 지원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자료집: 3-28.
- 양계민·조혜영. 2011. 다문화,아동청소년 실태조사. 무지개청소년센터·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다문화,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9(11): 195-224.
- 양미진·고홍월·김영화·이동훈. 2012. “다문화,아동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주 후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0(2): 87-113.
- 오경석·양계민·조성원·류성환·조윤희·정혜실·이장혁. 2009. 「다문화 아동청소년 초기 적응프로그램 개발방안 연구」. 무지개청소년센터.
- 오성배·서덕희. 2012. “다문화,아동청소년의 진로의식, 진로준비행동과 사회적 지원실태 탐색”. 「중등교육연구」 60(2): 517-562.
- 오영섭·김영순·왕금미. 2019. “이야기치료의 국제적 연구동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문학치료연구」 Vol.48, 한국문학치료학회.
- 이병철·송다영. 2011. “다문화가족 다문화,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3(4): 131-154.
- 이재분. 2011. “다문화,아동청소년 현황 및 교육지원 방안”. 「다문화,아동청소년 현황 및 과제 진단 토론회 자료집」. 21-36.
- 이지영. 201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모스트레스가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7(2): 105-125.
- 이혜원·김미선·석원정·이은하·신순영·이경숙·최은미. 2010.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윤향희·김경제. 2016.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선방향”. 「유럽헌법연구」 Vol.20, 유럽헌법학회.
- 장덕희·신효선. 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환경요인”. 「청소년학연구」 17(3): 123-147.
- 장명선·송연숙. 2011. 서울시 다문화,아동청소년의 현황과 지원방안. 서울시가족여성재단.
- 전경숙·이의정. 다문화가정 다문화,아동청소년의 초기적응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정하성·우룡. 2007. 『다문화청소년이해론』. 양서원.
- 조혜영. 2012. “다문화,아동청소년의 정체성 형성과정 및 적응지원 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4(4): 311-335.
- 조혜영·양계민. 2012. “다문화,아동청소년 학업실태 및 진로포부에 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4(3): 141-168.

Ⅰ 국외문헌

- Bhattacharya, G. 2000. "The school adjustment of south Asian immigrant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Adolescence』 35: 77-85.
- Buron, Beecroft, & Bel S, et al. 1998. 「PROSPECTS: The Congressionally Mandated Study of Educational Growth and Opportunity, Final Report on LES Students」. Prepare for the U.S. Department of Education. Washington, DC. Abt Associates.
- Duncan, G. J. and Brooks-Gunn, J. B. 1997. "Poor Families, Poor Outcomes: The Wellbeing of Children and Youth". In G. J. Duncan, & J. Brooks-Gunn(Eds.).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 McLoyd, V. C. 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2(2): 185-204.
- Patel, S. G., Slahuddin, N. M., & O'Brien, K. M. 2008.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Vietnamese adolescents: The role of acculturation, social support, socioeconomic status, and racism".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4(3): 218-240.
- Potocky-Tripodi, M. 2006.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Perceived Health of Children of Immigrants". 『Journal of Immigrant and Minority Health』 8(1): 11-18.
- Yeh., C. J., & Inose, M. 2002. "difficulties and coping strategies of Chinese, Japanese and Korean immigrant students". 『Adolescence』 37: 69-82.
- Yeoh, Brenda S. A., Lam, Theodora. 2007. "The Cost of (Im)Mobility : Children Left Behind and Children Who Migrate With a Parent". 『UN ESCAP. ed. Perspectives on Gender and Migration』. UN ESCAP: 120-149.

Ⅰ 관련법률

유엔아동권리협약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Ⅰ 인터넷 검색자료

무지개청소년센터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홈페이지

부록

아동·청소년 질문지

번호	문항
*	몇 년도 입국했는지?
1	한국에서의 배움에 과정에 대한 경험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	배움의 결과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공경험, 실패경험)
3	한국에서의 미래에 대한 생각?
4	학습에서 가장 어려운 점? (언어, 교육수준, 과제 등)
5	의정부시에서 학교생활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느낀 한계 및 어려움?
6	의정부시에서 지역사회 활동하면서 미등록되어 경험했던 한계 및 어려움?
7	의정부시에서 가족생활 하면서 미등록되어 경험했던 한계 및 어려움?
8	의정부시에서 생활하면서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9	학교에서의 교우관계의 경험?
10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은?
11	학교에서 어떤 점이 달라지면 좀 더 적극적으로 배우고 적응할 수 있는지?
12	다니는 학교 선생님에게 바라는 점?
13	가족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부모, 형제)
14	어떤 점이 달라지면 가족관계가 더욱 좋아질까?
15	한국이 아니라 부모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면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일까?
16	나는 한국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가?
17	타인의 자신에 대한 시선 및 인식은 어떠한가?
18	나의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떠한가?

부모 질문지

번호	문항
*	어머니, 아버지의 나이는?
*	몇 년도 한국에 입국했는지?
1	미등록된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웠던 경험?
2	미등록된 자녀를 양육하면서 법적 한계가 있었던 경험?
3	정부시에서 어떤 복지혜택을 받았는지? (교육, 건강, 복지, 소득 등)
4	정부시에서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경험과 법적지원을 원하는 것? (교육, 건강, 복지, 소득 등)
5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린이집 이용경험과 어려웠던 점?
6	일자리와 경제적, 주거 어려움?
7	노동 및 난민 생활로 어려운 점?
8	더 나은 적응을 위해 의정부시에서 원하는 것?
9	노동 및 난민 생활로 미등록되어 있는 아이들이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
10	의정부시에서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과 해결되었으면 하는 것?
11	의정부시에서 살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것은?
12	아이들에 대한 기대와 바람은 무엇인지?
13	아이들이 어느 단계까지 학업을 했으면 하는지?
14	의정부시에서 계속 살고 싶은지?
15	의정부시에서 이웃과 직장인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16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도움 받은 경험은?
17	아이들의 정체성에 대한 부모의 생각?
18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 교육, 건강, 복지 등 과거와 현재 사회가 변화된 점은?

학교 및 기관 담당자 질문지

번호	문항
1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부분?
2	학생들이 달란트가 있다면?
3	학교에서 어떠한 제도가 변해야 아이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는지?
4	가족에서 어떻게 협력되어야 학교에서 적응도가 높아지는지?
5	교육 관련 법령에서의 학생들이 학습권 보장의 한계는 무엇인가?